

第263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2006年12月22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9.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
12.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
16.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9.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
27.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4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0.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55.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5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8.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60.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3.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4.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71.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72.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73.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74.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
75.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
76.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77.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
78.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79.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8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8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85.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87.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10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 2007년도 예산안
105.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6. 200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7. 2007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08. 2007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09.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
110. 제26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附議된案件

- 국무위원(통일 이재정 · 외교통상 송민순 · 행정자치 박명재 · 건설교통 이용섭) 인사 7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8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응래 의원 대표발의)(노응래 · 정청래 · 김재윤 · 김명자 · 강길부 · 김재홍 · 이광철 · 전병헌 · 강혜숙 · 한광원 · 박찬석 · 우상호 · 장경수 · 최철국 · 김희선 · 강성중 · 박기춘 · 김교홍 · 박찬숙 · 윤원호 · 지병문 · 오제세 · 김혁규 · 정동채 · 정성호 · 최성 · 최용규 · 이광재 의원 발의) 8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
7.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 · 이인기 · 김석준 · 장윤석 · 박순자 · 박재완 · 김무성 · 이해봉 · 엄호성 · 이성권 · 김정훈 · 김기현 의원 발의)	12
9.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2
10.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2
11.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12.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13. 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정부 제출)	14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4
15.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강창일 · 우제창 · 이종걸 · 이인기 · 노현송 · 조성래 · 김선미 · 우제항 · 김낙순 · 김태년 의원 발의)	15
16.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5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5
18.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5
19.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
20.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7
21.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
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 · 김무성 · 임인배 · 김석준 · 권경석 · 박세환 · 이인영 · 박찬숙 · 이해봉 · 이성권 · 고경화 · 안명옥 의원 발의)	18
23.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9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9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 · 안민석 · 엄호성 · 강기정 · 노현송 · 이원영 · 이계경 · 신중식 · 이상민 · 이해봉 · 김성곤 · 김태년 의원 발의)	19
26.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군현 · 한선교 의원 발의)	19
27.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22
2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심재엽 · 이해봉 · 진영 · 권선택 · 서상기 · 이시중 · 허천 · 홍창선 · 김희정 박세환 의원 발의)	22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3
31.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 · 우원식 · 김형주 · 선병렬 · 강기정 · 김태홍 · 이광철 · 김태년 · 윤원호 · 강혜숙 · 김동철 · 한명숙 · 최규성 · 한병도 · 유승희 · 민병두 · 이재오 · 정두언 · 안민석 · 홍미영 · 안상수 · 권오을 · 지병문 · 이상호 · 이호웅 · 이미경 · 김재윤 · 주승용 · 장향숙 · 김재홍 · 양승조 · 백원우 · 정청래 · 강창일 · 이인영 · 김교홍 · 박기춘 · 노웅래 의원 발의)	23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3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3
3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태년 · 김재윤 · 이광철 · 정장선 · 김동철 · 이목희 · 박기춘 · 최규식 · 양형일 · 정청래 · 김원웅 · 신중식 · 최성 · 강기정 · 최규성 · 김춘진 · 조배숙 의원 발의)	29
35.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홍길 의원 대표발의)(고홍길 · 노웅래 · 강성중 · 강혜숙 ·	

권선택 · 권오을 · 김광원 · 김무성 · 김선미 · 김정권 · 김태년 · 노영민 · 단병호 · 문학진 · 민병두 · 박진 · 배기선 · 변재일 · 서재관 · 심재덕 · 안상수 · 엄호성 · 우제항 · 원혜영 · 유기준 · 윤호중 · 이강두 · 이경재 · 이계진 · 이규택 · 이낙연 · 이원영 · 이윤성 · 임태희 · 정성호 · 정상선 · 정중복 · 정진석 · 정청래 · 정형근 · 세종길 · 최구식 · 홍재형 의원 발의) …… 30	30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30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30	30
38.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31
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31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31
41.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31
4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31
43.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1	31
44.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 · 김학송 · 권철현 · 김종률 · 최인기 · 채수찬 · 우제창 · 김혁규 · 이시종 · 이성권 · 이계안 · 최철국 · 정갑윤 · 최규성 · 김우남 · 심재엽 · 신학용 · 심재철 · 김충환 · 안홍준 · 엄호성 · 김재경 · 이근식 · 이재오 · 이상경 · 박승환 · 나경원 · 이해봉 · 김영덕 · 노영민 · 김태년 · 박재완 · 허태열 · 안상수 · 이영호 · 유정복 의원 발의) …… 31	31
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34	34
46.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한병도 · 염동연 · 최철국 · 이계안 · 조정식 · 우제항 · 김형주 · 오영식 · 김현미 의원 발의) …… 34	34
4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 · 권경석 · 김영숙 · 신상진 · 이성구 · 이성권 · 이인기 · 이재웅 · 이해봉 · 주성영 의원 발의) …… 34	34
4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 · 서갑원 · 김태년 · 우제항 · 김덕규 · 이시종 · 박순자 · 권선택 · 이명규 · 조정식 · 김형주 · 노영민 · 최철국 의원 발의) …… 34	34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5	35
50.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5	35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백원우 · 정화원 · 정청래 · 장향숙 · 최재성 · 김덕규 · 윤호중 · 강기정 · 양승조 · 장복심 · 이광재 · 김부겸 · 안민석 의원 발의) …… 35	35
5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 · 박상돈 · 배기선 · 광성문 · 배일도 · 이원복 · 안택수 · 정두언 · 정진섭 · 이경재 · 유재건 · 신상진 · 정동채 · 남경필 · 이성구 의원 발의) …… 37	37
5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37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정부 제출) …… 37	37
55.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37
5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8	38
57.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8	38
58.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8	38
5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38
60.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0	40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0	40
62.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40
63.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40	40
64.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44	44
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 44	44

6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5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5
6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46
6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46
70.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46
71.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46
72.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6
73.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송영선 의원 외 41인 발의)	48
74.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 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49
76.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49
77.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	52
78.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52
79.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52
75.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58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58
8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8
8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8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0
8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명광·이영호 신국환·황우여·박상돈 정갑윤·이해봉·정성호·신상진·김애실 의원 발의)	60
85.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0
86.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배기선·박상돈·김종률·김재홍·이성권·정성호·이광철·이광재·장복심·우제창·이영호·안병엽 의원 발의)	60
87.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0
8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94.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5
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65
97.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5
o	의사진행의 건	71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72

94.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72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2
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72
97.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2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3
9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4
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이광재 · 노영민 · 송영길 · 이광철 · 정성호 · 우상호 · 김형주 · 배기선 · 한병도 · 최철국 의원 발의)	74
101.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5
10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5
1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75
109.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77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78
110. 제26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78

(10시15분 개의)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기노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국무위원(통일 이재정 · 외교통상 송민순 · 행정자치 박명재 · 건설교통 이용섭) 인사

(10시17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정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이재정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가와 국민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을 느낍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와 성원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계 아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다음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장관을 맡은 송민순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외교통상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안보외교 그리고 우리의 경제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는 경제통상외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영사보호 그리고 우리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가는 문화외교, 이러한 외교의 각 축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그러한 외교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러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이 많아서 부족한 게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그리고 질책을 해 주시면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의원님들과 의논드리면서 이러한 우리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다음은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임명된 박명재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정부 운영의 지원 관리 부서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조정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공권력과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생활의 안녕을 도모하고, 내년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용섭입니다.

건설과 교통 문제는 경제와 민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교통 행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 치도,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모든 국민에게 편리한 교통을 실현하는 데 제 모든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고 또 우리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정청래·김재윤·김명자·강길부·김재홍·이광철·전병헌·강혜숙·한광원·박찬석·우상호·장경수·최철국·김희선·강성종·박기춘·김교홍·박찬숙·윤원호·지병문·오제세·김혁규·정동채·정성호·최성·최용규·이광재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강성종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강성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의 열린우리당 의정부를 강성종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면 김한길 의원, 김기현 의원, 문병호 의원, 임종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그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되 이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며, 둘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국 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동법 별표 2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기금의 운영 주체를 광복회에서 국가보훈처로 환원하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역시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6인 중 찬성 182인, 기권 4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29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3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문병호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른바 전관예우 또는 법조 브로커의 개입 등에서 비롯된 법조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변호사 징계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변호사 등록심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를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 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이를 시정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규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금지되는 광고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그 외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 또는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법조윤리가 포함된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법조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조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직 퇴임 변호사 또는 특정 변호사로 하여금 수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법조윤리 협의회에서 징계사유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 신청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변호사의 징계 중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하고, 의뢰인 등의 징계 청원 및 재청원권을 신설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징계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양형기준의 설정·변경과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법원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양형기준의 효력과 관련하여 형량기준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되 판결에 양형기준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준중하도록 하였고, 법원이 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되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양형기준 제도 운영에 관한 입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 위원회가 발간하는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신학용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안, 박명광의원 대표발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시 방문판매자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둘째,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넷째,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보상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같은 제명의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제출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으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 등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민간기금화 예정인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공공성과 규모 및 운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운용 주체를 국가보훈처로 환원하고, 기금을 보다 미래지향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일부 법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外國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이인기·김석준·장윤석·박순자·박재완·김무성·이해봉·엄호성·이성권·김정훈·김기현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박영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기금 및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재정 구조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되,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의 임의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일부 법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2조의 경우에 제재요건이 포괄적이므로 이를 외국환 업무의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외국환 거래의 정지·제한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 경우를 각각 열거하고,

둘째, 개정안 제19조제1항은 제2항 및 제3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정비하며, 동조 제3항제7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를 위한 요건은 가급적 법에서 규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外國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0.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9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한이탈주민의보

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진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진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주승용 의원 및 정부에서 각각 제안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국가에의 입국 및 체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 위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동 국가 또는 지역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되, 영주·취재 또는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법 규정을 일부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김학원 의원, 이경재 의원, 황우여 의원, 박승환 의원, 이성권 의원, 박

성범 의원 및 이화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사건 220건이 적용할 법규정의 흠결로 서울가정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북한 이탈주민의 가족생활 보장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분야 자격 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넷째,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2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취업보호 기간을 2년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착금의 과소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외에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초기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양도·담보·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섯째, 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과 통일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조금씩 양보하여 이를 동 법안 시행령에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

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절충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먼저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6인, 기권 1인 으로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5인으로서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정부 제 출)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0시5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인 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연 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방·군 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4항 병역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조성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조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률 에서는 병이나 부사관에서 준사관이나 장교로 상 위직에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 하위계급에서의 근무경력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교 및 준·부사관에서 하위직 준·부사관으로 재임 용하는 경우 임용 전의 상위계급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어서 상위계급에서의 이 전 근무경력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되어서 복무 중인 자에게도 적 용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군인연금 제도는 연금 지급 업무를 담당 하는 특별회계와 연금 지급 총당준비금 조성을 위 한 기금의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과 다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연금의 탄력적 운용에 도 지장이 있어서 이를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 율적인 기금 증식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 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법안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 방·군사 시설의 통합 조정과 재배치 사업에 필 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진행 중인 이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에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범 위 확대, 세출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위원회 의 견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홍창선 의원 등 40인, 조성태 의원 등 27인 그리고 정화원 의원 등 17인이 발

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의 학점 취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라 하더라도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학 중인 경우라도 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조성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6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우제창·이종결·이인기·노현송·조성래·김선미·우제항·김낙순·김태년 의원 발의)

16.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1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8.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11시0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

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박기춘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기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남양주를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아울러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 등을 받아 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였더라도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등기가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등이 출자한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상의 청산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행정구역 명칭의 전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한자 명칭을 ‘거동 의(儀)’ ‘성할 왕(旺)’에서 ‘옳을 의(義)’ ‘임금 왕(王)’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경기도 의왕시 한자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내용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안, 두 번째 정부제출안, 세 번째는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안, 이상 3건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내용을 통합 보완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월 31일 노현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박기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7인, 기권 2인
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2인, 기권 4인으로서 경
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재
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재
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0.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
위원장 제출)

(11시17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민주

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4·3사건진
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2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창일 존경하는 국회의
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갑 출신 강창일 의원입
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주화운동관
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
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재오 의원,
권경석 의원, 이호웅 의원,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
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전반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과 추가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심
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정부 측 의견 청취 과정
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현행 1969년 8월 7
일(3선 개헌입니다는) 이후에서 1964년 3월 24
일(6·3 반대투쟁입니다)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직권재심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
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직권재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유족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해직자도 추가하고, 민주
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의료
지원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이미 지급한 치료
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사실조사에 협조하
는 과정에서 소득조회 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이후 위원회 활동상의 한계와 진상 규명의 과제를 반영하여 올바른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박찬숙 의원, 강창일 의원,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의결 사항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셋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진상 규명과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중앙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이용희 강창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4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이계경·김무성·임인배·김석준·권경석·박세환·이인영·박찬숙·이해봉·이성권·고경화·안명옥 의원 발의)

(11시25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갑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배 의원과 홍미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안에 대해 네 차례의 법안 심사소위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하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기계양일은 국경일, 현충일, 국군의 날, 국장 기간, 국민장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계양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낮에만 국기를 계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각종 물품 및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다양한 활용과 존엄성 유지를 균형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2분의 1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전체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그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안민석·엄호성·강기정·노현송·이원영·이계경·신중식·이상민·이해봉·김성곤·김태년 의원 발의)

26.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권철현·김석준·김양수·김희정·남경필·박형준·이계경·이군현·한선교 의원 발의)

(11시31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최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최재성** 교육 상임위원회의 최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5년 2월 24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진수희 의원, 정봉주 의원, 이주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의 교부율을 현행의 19.4%에서 20.0%로 인상하되, 그 시기는 2008년부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가 현행법상 전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있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100분의 80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를 종전과 같이 지방세 수입액의 전액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

은 다음 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하도록 하여, 시·도 간 지방세 수입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군복무 중인 병사들이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하여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에서 실시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학습과 학점 취득의 단절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군복무 중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어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부분과 새롭게 추가하여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고, 군복무 중이라는 상황을 감안하여 군복무 중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직원과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 및 자구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현재는 효력이 없는 상태인바, 동 법안은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최재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국회법상 15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의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7분 이내에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법안은 2004년 한시법으로 개정되어서 올해 말까지 필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이 법안을 양당 간사만의 협의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의 부족한 교육재정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서 만성적인 교육재정 적자와 교육복지 해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말 기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누적 규모가 2조 6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 예산 총액의 7.6% 수준입니다.

양당은 2008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대비 2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누적 지방채에 2006년과 2007년 예상 누적 적자까지 합하면 2008년 개정법안이 실행되어도 4조 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누적 적자에 더하여서 2008년도 이후에는 최소한 연간 4000억 원 수준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예상됩니다. 결국 개정안대로라면 교육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전망 자체가 세입은 8~9% 증가로 공격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6~7%로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입 결손 추계액, 세출 증가 추계액이 늘어나서 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04년 법안 통과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해서 결과적으로 세입 결손이 커지고 세출이 증대하여 지방채 누적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증가율이 전체 세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장하는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지원 확대 재정 확보는 이미 매우 불투명합니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교육 소외계층 지원, 의무 무상교육 확대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2002년도 대선 당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 GDP 대비 5%를 달성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번 처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니다.

현 정부의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이 GDP 대비 5%를 확충하려면 지방교육재정은 50조 5703억이 되어야 하지만 위원회 대안에 따르면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은 40조 수준으로 GDP 대비해서 3.56%에 불과합니다.

결국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빚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이에 저는 오늘의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지금이라도 모든 정당이 나서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일에 민주노동당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최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4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4인, 기권 8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2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 발의)(심재엽·이해봉·진영·권선택·서상기·이시종·허천·홍창선·김희정·박세환 의원 발의)

(11시48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강성종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강성종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강성종 의원입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의원님 여러분의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먼저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8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31.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우원식·김형주·선병렬·강기정·김태홍·이광철·김태년·윤원호·강혜숙·김동철·한명숙·최규성·한병도·유승희·민병두·이재오·정두언·안민석·홍미영·안상수·권오을·지병문·우상호·이호웅·이미경·김재윤·주승용·장향숙·김재홍·양승조·백원우·정청래·강창일·이인영·김교홍·박기춘·노웅래 의원 발의)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1시52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의사일정 제3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전병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9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행성 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게임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하도록 하여 사행성 게임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업무에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의 점검을 추가함으로써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를 통한 사행성 조장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현재 3단계로 분류하는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 4단계로 세분화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게임제공업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년게임제공업은 등록제로 하였고,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도입하되 주거지역일 경우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사행성 PC방을 근절하기 위해 자유업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 강화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따라 완구류·문구류 등의 일정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하여 게임물이 사행화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법 환전에 따른 사행심 조장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전업의 금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여 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대한 조기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행성 게임물을 비롯하여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행산업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과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이와 같은 사행산업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을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손봉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사행산업 관련 소관 부처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및 총량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 농림부 및 복권위원회 등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 사업자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과 지도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영화발전기금의 신설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 등을 통합·조정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현재의 '영화진흥금고'를 대신한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현재 영화진흥금

고의 사업 외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예술평화발전기금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징수하는 부과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부과금의 징수기한은 모금 목표액(2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성과를 측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채널 운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과 아울러 중계유선방송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에 공익채널과 종교채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의 전환이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과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 융합 논의 결과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1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채널 이외에 공익채널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공익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일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와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중계권 독점 경쟁에 따른 외화유출과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적 관

심이 매우 큰 주요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단일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을 독점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중계방송권 총 계약금액의 5%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방송위원회는 월드컵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주요행사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 편성이 채널별 그리고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을 통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현재 33%로 되어 있는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지분 한도를 49%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문광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내용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전병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7분 이내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봉숙 의원** 민주당 소속 문광위원회 위원 손봉숙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카운트하지 마십시오.

반대토론은 15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15분분량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7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분으로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문맥이 제대로 흐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7분으로 결정을 한다면 어제쯤, 7분으로 한다는 통고를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7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을 다시 7분을 주십시오.

○**부의장 이용희** 예, 다시…… 7분만 하셔야지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통보를 해 드리는데, 국회법을 보니까……

○**손봉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7분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빼고.

○**부의장 이용희** 7분 드려야지요. 7분 하시지요.

7분 다시 넣어 드려요. 그러세요.

○**손봉숙 의원** 예, 다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광위원회 소속 의원 손봉숙입니다.

오늘 상정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무위원회 수정안과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광위원회 수정안을 실질적

으로 병합 심사하여 문광위원회에서 재수정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 상정된 법안의 발의자는 우리 위원회(대안)이 아니라 여당 의원 단독 법안의 번안으로 올라왔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록상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당 의원의 법안은 문광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자는 안이었으므로 문광위원회에 제출이 되었고, 본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자는 입장이었으므로 정무위원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자 문광부에서는 수차례 본 의원을 찾아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중진의원도 저를 불러 법안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두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 25일 정무위원회와 문광위원회를 각각 통과합니다. 두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날 통과된 것도 여당의 요청에 따라 날짜를 맞춘 것입니다.

문광위에 상정된 법안도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해진 두 법안이 8월 23일 법사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사위는 똑같은 명칭의 내용도 비슷한 두 법안이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크게 문제 삼아 두 법안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위원회소관주의 원칙에 따르면 동 법안은 문광위 법안이 폐기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무위 수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문광위에서 동 법안을 정무위로 이관하여 두 법안이 병합 심의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정무위는 심의를 할 의지도 없이 시일을 끌고 동 법안을 문광위로 넘겨주지도 않았고, 문광위는 조속히 심의하겠다는 의지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기 때문에 제 동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문광위 법안소위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정무위원회 수정안과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문광위가 수정한 문광위원회 수정안 두 안을 정부안과 비교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문광위원회(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상정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법안입니다.

두 의원이 각기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소관주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폐기시키고 여당 의원 안을 살린 것은 ‘바다 이야기’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이를 여당의 업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은 비록 본 의원의 이름이 날아가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수정한 실질적인 문광위(대안)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서는 동 법안을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처럼 야당 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유감을 표시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한 말씀 드립니다. 총리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총리가 무조건 여당의 편에 서서 부당하게 의원의 입법활동에 간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무총리조정실은 이 법안이 발의된 순간부터 마지막 통과될 때까지 간여를 했습니다.

총리실은 법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총리실이 너무 깊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문화관광부를 포함한 정부에 요청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에게는 엄연히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정하는 법안은 정부가 발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들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편법은 제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을 요하는 법안이 아닌 경우 정정당당하게 입법예고하고 정부가 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국회의원은 여당 야당의 차별 없이, 어떤 압력이나 회유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위원회소관주의를 위배해 가면서까지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공중에 날려 보내고 여당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동 법안이 아마도 첫 번째 사례일 것입니다.

한 단어를 고치는 경우에도 그 법안을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한다고 합니다. 입법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대상이고 17대 국회의 불명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동 법안이 이렇게 결말이 난 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책임 있는 해명을 정중히 요구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임채정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의논을 못 드려서 유감입니다.

임채정 의장님께서도 제가 찾아뵙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의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서는 두 법안이 반드시 병합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두 법안이 병합심사되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도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가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 분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토론이란 명목으로 나왔지만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주십시오.

다시는 야당 의원이 제출한…… 이런 식의 입법권의 침해는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손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전반기에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은 사실 2004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본인이 대표발의를 하고 그 외에 몇몇 의원들이 계속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통과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정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행산업이 각 부처별로 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도박에 걸린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클리닉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각각 문화관광위원회하고 정무위원회 두 가지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사위에 올라가서 바로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께서 어떻게 똑같은 법안이 각각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다시 반려했습니다. 여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법사위에서 다시 한 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병합심사를 하려고 했지만 돌려갔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의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모든 법안심사소위원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법안의 내용은 모든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에 건전한 여가산업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26인, 반대 16인, 기권 16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44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밥 잡수러 가셔야 된다고 원망이 아주 하늘같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저는 문광위원회 소위 위원입니다마는 한 1주일 정도 외국 출장 갔다오는 사이에 이 법이 통과되고 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되어 버려서 제 의사를 전달할 길이 막혔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제8조4항, 위성방송사업자와 위성DMB방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 지분 총수 중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하여 소유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소조항입니다.

오늘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법안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한데 묶었기 때문에 한 조항에 대한 반대토론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위성DMB사업자의 1대 주주가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을 주도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대상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와 KT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정감사 때 기간통신사업자인 SKT가 주과수를 할당받아서 직접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T가 법적 근거도 없이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망 주과수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SKT로부터 주과수를 임대해 위성DMB사업을 하고 있는 TU미디어 역시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는 물론 SKT와 TU미디어조차도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라는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나 반박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시작한 위성DMB사업

자가 1년여의 사업 끝에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자본잠식을 운운하며 소유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조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한 신규 미디어의 경영실패를 소유지분 완화로 되돌려보겠다고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KT는 2005년도에 유·무선 통신사업 전체에서 16조 8773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특히 KT의 2005년도 시장지배력은 시내전화 93%, 시외전화 81%, 국제전화 41.3%, 전용회선 51.5%, 초고속인터넷 51.7%로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막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KT는 이같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기반을 바탕으로 IPTV사업까지 진출해 방송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T와 IPTV의 경쟁매체인 케이블TV 사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KT의 한해 매출액이 108개 케이블TV사 전체 매출액의 10배가 넘습니다.

KT의 경우 2005년도 기준으로 유선통신만 11조 8700억 원이고, 케이블TV는 108개사를 다 합쳐서 전체 매출액이 1조 595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KT가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로서 24.46%의 소유지분을 가지며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대기업의 소유지분을 49%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국내 최대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안겨 줘서 독점적 지배체제 구축 기반을 보장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통신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출할 경우 KT의 매출규모의 10%에도 못 미치는 전체 케이블TV는 법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해주는 것은 곧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동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SKT와 KT 두 기업은 방통융합을 통한 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통신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위성DMB사업자와 IPTV 사업자로 무소불위의 시장 장악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송의 공적영역은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이라는 미명으로 자본의 힘과 논리에 따라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시청자 권리는 땅 위로 곤두박질칠 것

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성방송사업자와 위성DMB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방송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청자 권리와 공익성을 대변하는 공적영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산업적 논리에 의한 방송영역이 잠식되어 가는 것에 강한 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대기업의 소유 지분 완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간곡한 뜻을 이해하시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반대하여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용희 손봉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5인 중 찬성 102인, 반대 37인, 기권 1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부의장 이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법안과 내년도 예

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강창일·김태년·김재윤·이광철·정장선·김동철·이목희·박기춘·최규식·양형일·정청래·김원웅·신중식·최성·강기정·최규성·김춘진·조배숙 의원 발의)

35.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고흥길·노웅래·강성종·강혜숙·권선택·권오을·김광원·김무성·김선미·김정권·김태년·노영민·단병호·문학진·민병두·박진·배기선·변재일·서재관·심재덕·안상수·엄호성·우제항·원혜영·유기준·윤호중·이강두·이경재·이계진·이규택·이낙연·이원영·이윤성·임태희·정성호·정장선·정종복·정진석·정청래·정형근·제종길·최구식·홍재형 의원 발의)

3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회장 제출)

(14시44분)

○부의장 이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최구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장대리 최구식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범위를 ‘고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가하며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념재단 설립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범위 및 기념사업 관련 개정안은 원안대로 하되, 기념재단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현재 민법상 법인인 기념재단을 2010년에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부칙 부분입니다.

이는 유족범위를 ‘증손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할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유족등록 업무가 2009년 12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무국의 기능 종료와 함께 동 기념재단이 기념사업 및 참여자 발굴 등 조사·연구기능, 기념관 등 시설물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기념재단의 특수법인화 시기를 사무국의 유족등록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0년 1월 1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흥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지도사 자격 신설, 지방문화원진흥기금 설치,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해외에 지회 설치, 지방문화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기부금품 모집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제도 신설은 지도사의 성격, 활동영역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보다는 포괄적인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했습니다.

둘째, 지방문화원 해외 지회는 해외문화원 통합 흐름과 예산부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지방문화원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금 축소 및 통폐합 추세와 맞지 않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주요 내용은 국가의 도핑방지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도핑과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법정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6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관광위원장)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최구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4인 중 찬성 127명, 반대 5인, 기권 22인으로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5인 중 찬성 150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8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38.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1.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2.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3.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44.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김학송·권철현·김종률·최인기·채수찬·우제창·김혁규·이시중·이성권·이계안·최철국·정갑윤·최규성·김우남·심재엽·신학용·심재철·김충환·안홍준·엄호성·

김재경 · 이근식 · 이재오 · 이상경 · 박승환 · 나경원 · 이해봉 · 김영덕 · 노영민 · 김태년 · 박재완 · 허태열 · 안상수 · 이영호 · 유정복 의원 발의)

(14시55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우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물등록제 및 동물판매업과 장묘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동물의 번식·사육·판매 등 동물관리 전 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동물 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둘째,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를 도입하여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토록 하였고,

둘째,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공익용 산지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는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법률에서 규정토록 하고,

둘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직접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 등 동·상해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농작물별 보상재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발생의 빈도, 피해의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사단법인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공법상 특수법인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 방제사업과 해양환경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해양경찰청의 출입검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할 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일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희 부의장, 이상득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가 면제되고 있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 중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이들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선박 및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수요자 위주의 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벌칙규정상 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0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인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유류 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46.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한병도·염동연·최철국·이계안·조정식·우제항·김형주·오영식·김현미 의원 발의)

4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권경석·김영숙·신상진·이성구·이성권·이인기·이재용·이해봉·주성영 의원 발의)

4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오영식·서갑원·김태년·우제항·김덕규·이시중·박순자·권선택·이명규·조정식·김형주·노영민·최철국 의원 발의)

(15시08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4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광성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광성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대구 중·남구 출신 광성문 의원입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갑원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운영 및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지 또는 부지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고 도시형공장사업시설의 설치 허용,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 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협업지원센터 및 협업사업계획심의위원회의 신설규정은 예산 절감 및 인력 증원 억제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이행실적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공장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체에 대한 입지공간 제공과 공장 마련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위반행위를 법률에 격상시켜 규정함에 있어서 동 시행규칙 제27조제1호에 대하여도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설치시에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등을 받도록 하여 기본적·종합적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광성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2인 중 찬성 154인, 반대 5인, 기권 3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0.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 발의)(백원우·정화원·정청래·장향숙·최재성·김덕규·윤호중·강기정·양승조·장복심·이광재·김부겸·안민석 의원 발의)

(15시18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4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장복심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장복심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안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의 부수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금년 말로 실효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중 예산 및 기금과 직결되고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보험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금에 대하여 용도를 각각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둘째,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셋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예외적으로 대행 청구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기관단체에 한하여 허용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가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운영과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회비 모금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청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금년 말로 실효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병상수급 계획 수립·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옮겨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벌칙규정 중 벌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특별법 폐지에 따른 벌칙 등 경과조치를 각각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장복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3인 중 찬성 165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66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박상돈·배기선·곽성문·배일도·이원복·안택수·정두언·정진섭·이경제·유재건·신상진·정동채·남경필·이성구 의원 발의)

5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정부 제출)

55.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6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52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의사일정 제55항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정진섭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정진섭**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진섭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착 또는 개조하기 이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에 대한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와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개조된 저공해 엔진의 결합 확인검사의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 수정과 함께 시행시기를 행정입법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당초 공포 후 즉시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한편, 건축 관

련 법령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배출규제, 함유폐기물의 관리, 함유기기의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입법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일부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사유를 일부 확대·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습지보호지역 내의 행위제한의 예외사유 중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행위제한 예외사유에서 삭제하고,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군 병력 투입, 작전 활동 등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심사보고서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상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습

56.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7.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8.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35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56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김종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출신 김종률 의원입니다.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해서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고용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정보 제공업자 등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구인·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와 동일한 자로 보도록 하여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정부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 제도 및 특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상무위원회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노동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명시하여 노동쟁의의 예방 및 사후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출 방식을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 대상 공익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 체계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건 처리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해산 절차 등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훈련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훈련 과정의 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서 일정한 금액 미만의 훈련비 또는 지원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제한하는 대신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또 지정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으로 훈련 직종별로 훈련교사 1인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 시 출연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장에서의 퇴출이 어려워 훈련법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 후 동 법인의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속받은 자는 귀속일로부터 10년 동안은 직업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勞使政委員會議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김종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직
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4인, 기권 5
인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노
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근
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
동위원장 제출)

**62.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63.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
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45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60항 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6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
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4건
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노사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제 노동
기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제3자 지원신
고제도를 폐지하고 그 벌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
다.

둘째,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공익사
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
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
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으나
대체근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의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로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
여지원 금지규정 시행시기를 2009년 12월 31일까
지로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중
임금 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자
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조
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상 해고 시 사전통보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50일로 줄였습니다.

셋째,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넷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명령으로서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금전보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체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사용자에게 대하여 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로 회의 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부칙 제2조는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부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부터 교원 노사관계의 교섭 질서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시효 규정의 효력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은 노사관계의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일부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또 일부는 사용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이 법 취지의 전체적인 숲을 보지 않고 일부 조항만을 들어서

노동자에게 개악이라는 지적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환노위에서는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9월 11일 합의보다 많은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부 제출안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敎員의노동조합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오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분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단병호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이후에 일부 의원들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본 법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합의 처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한 번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발표한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법안에

반대해서 10여 일이 넘게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또한 회의 절차에 대해서 동의한 바는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특히 법안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노동 3권을 통해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목격되는 대량 계약 해지와 무분별한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 법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10년간의 노동기본권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간절히 원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개악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과시킨다면 노동자들의 불신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법안의 성격과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복수노조 금지를 3년간 연장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먼저 10년 동안이나 금지되었던 복수노조를 또 다시 3년간 금지한다는 것은 단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반면에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률로 규정한 예가 없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운수사업을 포함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

는 명백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입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생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병원·전기 공급·수도 공급·전화 서비스·항공관제 업무 등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확대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현행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유지업무 신설,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 유지 등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삼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파업권을 이처럼 중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직권중재를 폐지한다면 사실상 파업권을 더욱 무력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환노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의 일부분을 수정하고 대체근로를 50%만 허용한다고 해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본질적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대체근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 현장에서 큰 혼란이 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은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서 노동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체근로를 금지한다고 해도 파업이 남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노동조합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불법 파업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줄속으로 심사하여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 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정규법안에 이어 노동 3권마저 후퇴된다면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단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단원을 출신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 온 이해당사자들이 노사관계의 발전과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화하고 협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동계의 일부가 대화에는 참여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은 그분들의 의견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반대토론을 해 주신 단병호 의원님과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토론 후, 합의 후 통과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투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을 두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방금 존경하는 단병호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장은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함께 공익의 유지를 위한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국제 기준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은 ILO의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그간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원천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업이 매년 거듭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단체교섭의 기능이 형해화된 바가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한 노동법의 개악의 상징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꼭 26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대체근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대체근로를 필수공익사업자에 한해 허용하되 파업 참가자의 50%, 이 파업 참가자의 50%가 저희가 협의회에

서 이루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의 대체근로까지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시정하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도화하였는데 이를 개악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복수 노조의 인정을 다시 3년간 유보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단병호 의원님께서 잘 표현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즉시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업별 노조체제에 익숙한 우리 현실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준비가 따르지 않는 복수 노조의 전면 허용은 각 기업에서 노노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복수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사 간에 시행 유보를 합의하게 되었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유보기간 중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시행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복수 노조의 시행은 전임자 임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단병호 의원님께서 전임자 임금을 자율화에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율화에 맡김에 있어서도 원점에서부터 자율화에 맡기는 것이지 현시점으로부터 자율화에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관계법은 서로의 이해가 다른 노와 사를 법적용의 구체적인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노사의 이해와 균형을 이루고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악이라고 폄하하거나 노사관계법 선진화를 부정하는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는 이 법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속 제 정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찬성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득 제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7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0인, 기권 5인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1인 중 찬성 157인, 반대 10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6인 중 찬성 170인, 기권 6인으로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4.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6시09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 6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장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경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상록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의 장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상속된 경우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당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건본주택의 건축기준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건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이상득 장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5, 기권 3인으로서 주택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6.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6시13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66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심재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 시기는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둘째,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경매로 매입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기존의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건교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해당 부지의 매수 여부 결정기간을 기존에는 2년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새 법에서는 6개월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셋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을 때 건축규제에 관한 적용기준을 기존에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그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심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4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

김성곤·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6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70.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71.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72. 大都會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9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상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명칭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완한 것이고 다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은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과 공항의 건설, 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을 공사의 사업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입주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항개발 및 시

설 운영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등을 위탁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공사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절차 및 보상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임직원으로 명확하게 하고, 타인의 토지 출입절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투자 및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기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급격한 광역화로 인한 교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안으로 보았으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

률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이상득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기권 5인으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3.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송영선 의원 외 41인 발의)

(16시29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73항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송영선**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송영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온 무기는 총 196억 불 규모입니다. 이 중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통한 무기구매는 76억 4400만 불 규모로 이 방식으로 전 세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오는 국가 중에 제5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자주적 국방력 건설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 행사를 위한 전력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사와야 할 미국산 무기량은 불가피하게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30년간 미국 의회가 정해 놓은 대외군사판매 구매국 분류기준 중 가장 낮

은 단계인 제3등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무기판매의 절차와 대상이 제1등급이나 제2등급 국가에 비해 까다롭고, 사할 수 있는 무기의 비밀등급도 낮으며 무기거래 결제기일도 길었습니다. 또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무기인가비용을 추가로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법령으로 무기판매를 규제하는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의원 외교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지원활동과 범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무기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성·불공정성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는 대외군사판매의 무기구매 절차와 방식을 재검토하여 한미 간 상호이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위가 제2등급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셋째, 미국 의회에 대해서는 미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상호 호혜의 조건하에서 방산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대외지원법 및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상득** 송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

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 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6시34분)

○**부의장 이상득** 의사일정 제74항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 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관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기인 98년도에 최대 179개의 부도공공임대주택이 발생하는 등 2006년 7월까지 누적하여 모두 578개 사업장에서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총 12만 429호의 영세서민이 그 피해를 보았으며 그중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불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부도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장의 당초 기금대출액 2조 1000억 원 중에서 미상환액수가 1조 1000억 원으로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득 부의장, 임채정 의장과 사회교대)

독거노인 신용불량자 등 공공임대주택에 주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정책적으로 주거안정을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을 부실하게 대출·관리를 해온 국민은행, 임대주택 부실 인·허가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고의 부도 및 현행법을 악용하여 기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는 건설업체 그리고 총체적 관리·감독의 책임자인 건설교통부의 부적정한 기금관리·운영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는데,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체로 인해서 발생한 부도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감사

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규명 및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관리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 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

(건설교통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 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대출·관리 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들 안건 중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상정을 잠시 보류하였다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16시39분)

○**의장 임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임종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유엔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 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3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1년간 파견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되는 국군부대는 보병, 공병, 의무병을 포함하여 350명 규모로 편성하고,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둘째, 국군부대는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소요 경비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도록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레바논 현지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당분간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발하거나 우리 군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레바논 파병은 제2의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것이라라는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은 평화유지군 파병이

지만 동티모르나 소말리아에 파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바논 파병 결의안은 편파적인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불공정한 파병입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할 경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재침공해 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대의 신변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라크 파병으로 나빠진 중동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가 또 다시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 브랜드가 매우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인구가 370만 명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3분의 1, 이슬람 수니파가 3분의 1, 이슬람 시아파가 3분의 1인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을 하게 돼 있고, 이슬람 수니파가 총리를 하게 돼 있고, 이슬람 시아파가 국회의장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명의 각료가 있는데 이 중에 기독교가 12명, 이슬람교가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어떠한 단체나, 헤즈볼라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테러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카에다 같은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뭐냐, 이는 1982년 설립된 이슬람 시아파의 정당이자 무장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권을 잡고 있는 하마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 128석 중에 20%에 해당하는 35석을 획득한 정당입니다. 또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지방에서는 의석을 석권한 정당입니다.

레바논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침공이 자주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해서 1922년에 위임통치를 했습니다. 영국이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똑같이 위임통치를 했습니다.

43년도에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47년도에 시리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

리고 4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을 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입니다. 이로부터 팔레스타인, 중동에 비극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1948년 1차 중동전쟁에 있어서 78%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56년 2차 전쟁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등지로 갔습니다. 67년에 유명한 3차 중동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이반도는 이집트가 점령했습니다. 요르단 가자지구도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도 이스라엘이 다 가져갔습니다.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서안은 이스라엘이 반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골란고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1967년도 이후로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자신의 자치본부를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옮긴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침공이 40년 동안 시작됐습니다. 무려 여덟 차례 있었습니다. 68년, 78년, 81년, 82년, 93년, 96년, 2000년, 그리고 올해 있었습니다.

침공의 명분은 대이스라엘 저항조직을 제거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친이스라엘 레바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75년부터 90년까지는 레바논 정부를 돕는 기독교 팔랑헤 민병대와 팔레스타인 시아파 간에 내전이 있어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레바논은 초토화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2006년 7월, 33일간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은 초토화했습니다. 레바논 주민들은 여기에 적극 반대했고 헤즈볼라는 적극 싸웠습니다.

이러고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유엔은 유엔군을 파병하면서 레바논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패권적 대중동 정책에 유엔이 동원된 것입니다. 유엔결의안 1701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공격적 군사행동만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적 군사행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모든 군사행동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만을 일방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엔사무총장을 우리가 배출했기 때문에 유엔결의에 찬성해야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유엔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이 막아 줘야 됩니다. 코피 아난은 계속적으로, 지금 퇴임하는 마당에서도 이라크 침공은 매우 잘못됐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잘못됐다, 이것을 유엔에서 좀 도와준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을 반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일날 헤즈볼라 지지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80만 명이라는 레바논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인구 20%가 헤즈볼라를 모두 지지한다고 모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패권 정책에 우리가 또다시 동원되는 PKO 결의안에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히 반대하셔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으로 잘못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또한 높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정 다음은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자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1000여 차례의 폭격을 감행하면서 레바논 민간인 1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한 달간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안 우리 국제사회는 침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대를 파병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 목적이 레바논 사태 안정화와 중동 지역 평화 달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동안 평화유지군이 없어서 전쟁과 살상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평화유지군은 1978년부터 레바논에 주둔해 왔습니다. 1978년 3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유엔은 안보리결의안 425호를 채택하고 유엔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82년, 93년, 96년 그리고 올해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이 유엔평화유지군 본부건물을 공격해서 직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00명 병력을 1만 5000으로 늘린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레바논 파병 근거인 유엔결의안 1515호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법적 승리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이스라엘의 자의적인 공격을 또다시 묵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성이 핵심인 평화유지군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당사국 국민들에게는 점령군에 불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전사로 파병되는 레바논 남부는 안전합니까? 지난 12월 15일 통의통위에서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망자 수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답변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 후 이 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상임위원회 산회 바로 직전에 가서는 258명이 사망했다고 정정 답변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부 보고서에 의해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의 안전을 위해 위원들이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왜곡 전달받은 채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이러한 동의안입니다. 레바논 남부는 정부가 말하는 사망자가 전혀 없는 지역이 아니라 사망자가 258명이나 있는 그런 지역임을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부대 편성 그리고 구체적 임무, 소요예산 및 주둔기간 등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조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매우 급조된 내용,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 5일 전에야 이 레바논 파병 동의안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판단이 가능할 수 없도록 이런 상황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의안입니다.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미국도 실패를 인정한 이라크전쟁 파병의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어떠한 의무도 찾아볼 수 없는 레바논 파병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레바논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군대와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 살상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것에 반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

로 레바논의 평화를 위한 또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반대표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4인, 기권 22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7.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

78.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79.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16시5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7항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8항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79항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성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곤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파견연장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둘째 파견부대의 규모는 2300명 이내로 유지하되 2007년 4월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셋

째, 2007년 중에 이라크 정세,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이툰부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무 종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철군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대외 관계를 고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를 심의함에 있어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인식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동 의안의 주요 내용 중 세 번째 항목인 2007년 중 에 자이툰부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 획을 수립한다는 이 부분이 2007년 중에 임무를 종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 중에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 로 정부안에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 회에 제출하고 자이툰부대 임무종결시한을 2007 년 내로 한다는 수정안 내지는 단서조항을 넣자 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야 위원 간의 장시간 논의 끝에 정부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것은 2007년 내로 임무를 종결하고 그 임무 종결 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장수 예.

○국방위원장 김성곤 그래서 이 정부의 답변이 수정안에서 요구한 것과 사실상 내용이 다르지 않으므로 수정안을 따로 내지 않고 정부안대로 표결하여 찬성 15인, 반대 1인으로 정부 원안대 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국방위에서 파견연장 동의 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내년 철군을 대비한 철군 예산 149억 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의 일부는 즉각 철군을 주장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현 재 남아 있는 부대를 철거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철군을 주장하는 안과 지금 정부안이 실제에 있어서는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철군을 요구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동의안 에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 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들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진료활동,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 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동맹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견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 의료지원부대와 건설공병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고 내년 말에 철군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파견연장기간을 2007년 12월 말 철수 조건하에 1년을 연장하는 것이며, 대상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파견 2개 부대입니다.

파견 부대의 규모는 현재 의료지원부대 70명 이내, 그리고 건설공병부대 150명 이내입니다.

셋째, 부대의 임무는 의료지원부대의 경우 현 지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 및 미군과 동맹 군에 대한 진료이고, 건설공병부대는 미군 및 동맹군의 기지 운용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대민 지원입니다.

넷째, 부대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되 작 전 운용은 현지사령관이 통제하며, 부대의 파견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구호 및 재 건 지원, 국제적 연대에 동참,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 등 지금까지 우리 국군부대가 이룩한 성과 와 2007년 12월 말까지의 철수계획 등을 고려해 서 이 동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 조하여 주시고,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 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참조)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 안 심사보고서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 보고서
-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 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열린우리당 출신 정청래입니다.

지난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의 선거용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는 “클린턴이 거짓말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라며 미국의 강경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29개국에 철군했거나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국군을 또다시 연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 즉각 철군해야 된다는 이유를 열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게 자이툰에 가면 자이툰 부대원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 제가 9월에 다녀왔는데 이 자이툰 모자 여기에 보면 ‘이라크평화재건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공식 명칭은 ‘전후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전 중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병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이라크 실태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 2월 총선 발표 후 2372건이던 테러 발생은 2006년 8월에 3736건으로 테러가 급증했으며 쿠르드 자치공화국 내무장관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매일 1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고 바그다드에서만 50명 이상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인 미국, 그러나 미국 국민도 이라크전쟁을 실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CNN이 발표한 미국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64%의 미국 국민이 이라크전쟁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영국 가디언의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71%, 멕시코의 89%, 캐나다의 73%의 국민이 이라크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애초에 전쟁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세력과의 연계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

났습니다.

넷째,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인권 유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정과 민생은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지난 3년간 죽어 간 이라크 민중은 6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여 명씩 죽어 갔습니다.

다섯째, 미국 입장에서는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한국군이 대신 이 역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의 원로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 연구 그룹(Iraq Study Group)’에서도 이라크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명분 없는 전쟁에 국제사회는 이미 이라크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8개국이 30만 명이라는 파병을 했지만 지금은 25개국 안팎에서 16만 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지금 철군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이라크 민중은 미국 및 다국적군의 주둔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여론조사가 그러합니다.

여덟째, 자이툰부대 주둔 비용이 18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90%는 병사들 월급 주는 일입니다. 10%를 가지고 대민 봉사활동,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군을 하면 1800억을 이라크에 그냥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뢰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내걸었던 경제적 신뢰는 오히려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빌은 30%씩 지금 도시가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르빌에 파병했기 때문에 전체 30% 성장하는 아르빌의 공사는 터키와 독일이 그 수주를 다 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르빌에 파병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자이툰 영내에서 마치 감금생활을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역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홉 번째 이유입니다.

열 번째,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0%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철군 계획서를 붙여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조차, 열린우리당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국방부는 무시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90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래, 위에 붙어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철군한 나라에게 미국이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했다 하는 그런 근거도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파병을 할 때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신뢰를 얘기했지만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신뢰에 기여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는 북핵 사태로 한반도 평화는 더욱더 흔들렸습니다.

철군한 나라에게 미국이 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근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철군해도 보복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가…… 29개국이 철군을 했거나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모자를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여름에 솜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겨울에 반팔 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국회가 지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한 번쯤은 미국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입증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배일도입니다.

저는 무슨 평화주의자네, 아니면 진보주의네, 이런 주의에 입각해서 거창하게 지금 현재 정부가 요청한 국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감축계획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될, 본질적인 참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밭 딛고 사는 세상이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데도 물리적,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는 원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반대논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번에 파병 연장과 감축동의안 제출 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 관계 및 파병 효과의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는 국회에서 동의안에 찬성을 보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면 저희 국회는 정말 파병 연장에, 감축계획안에 동의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보면요, 우선 미국과 영국이 주도를 해서 이 전쟁이 수행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요청한 것이 2003년도 3월 18일이었습니다. 그 요구안이 프랑스의 반대 등으로 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자 미국과 영국이 주도를 해서 3월 20일날, 2003년입니다. 이라크를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파병한 군대의 이름을 저희는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리지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다국적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르려고 하면 유엔헌장 제 43조에 맞는 조건이 합당해야 평화유지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국적군이라는 교묘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미국으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은 것은 언제냐, 2003년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파병을 결의해 준 것은 2004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유엔 결의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파병을 요청받은 후에 2003년도 10월 16일날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도 “파병을 해라”가 아

나라요, “파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결의를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세계 평화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내야 된다, 끝내고 정말로 이라크 상황이나 다른 부분의 필요가 있다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파병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신속한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라크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65억인데요,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는 인구가 14억입니다. 그중에 이슬람을 믿고 있는 국가 중에서 57개 국가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빼놓고 보면 전 세계의 25%가 이슬람 종교권에 있는데, 우리 자이툰 부대가 가 있는 아르빌 지역의 종족에 대해서는요 이 14억 인구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이란과의 그동안의 관계들 때문에 대단히 고립되어 있고,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자이툰 부대가 가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이라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익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2003년도, 이라크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가는 배럴당 35달러였습니다. 텍사스 중질유 기준입니다.

지금 유가가 얼마입니까? 62달러입니다. 약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 송두리째…… 물론 이것이 이라크전쟁 때문에 다 생겨난 것은 아니겠지만 유가는요 어쨌든 그렇게 올라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잡아 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을 저희는 다시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전을 내세웠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지역이다.” 이것은요, 양쪽으로부터 저는 욕 얻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유엔에서 정말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옛날 6·25전쟁이 있었는데요,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16개 나라의 유엔 파병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안전한 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총소리 한 방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 가 있으면서 마치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잘못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느 항목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남의 나라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이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데 동참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 정말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제 36년으로부터 고통당했던 것을 전 세계에 평화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의안은 부결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17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자이툰부대의 파병 반대활동도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햇수로 3년이 지난 지금 이라크전쟁이 명분 없는 잘못된 전쟁이며 미국에 의한 침략전쟁이라는 입장이 더욱더 옳았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자이툰부대의 철군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의 양상이 이라크 종파 간의 내전으로 격화되어서 파병과 연장 명분인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평화 정착과 재건은 다국적군이 철군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민주당이 승리한 중간선거 이후에 이라크전쟁의 핵심인물인 럼즈펠드 장관이 경질되었고, 미국의 이라크 정책의 변화를 예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전후 재건복구사업 참여로 안정적인 석유 확보와 경제적인 실리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의해서 민간기업들의 활동이 오히려 가로막혀지고 있고, 파병하지 않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터키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대규모로 재개발 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이 기한을 넘어서 주둔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유엔 결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주둔의 명분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라크 파병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파병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철군했거나 철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군한 나라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깨졌거나 아니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미국의 국방부도 아르빌에 한국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이라크의 안전과 안전평가보고서에서는 아르빌을 비롯한 5개 주를 치안권 이양 준비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아르빌주를 포함해서 준비된 지역부터 치안권 이양을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아르빌 지역에 다국적군이 계속 머무를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자이툰부대가 영구적인 미군 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 전역에 대규모의 미군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란 공격을 계획한다면 이를 위한 거점이 아마도 쿠르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그렇게 된다면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 주둔 한국군은 미국의 중동 지배전력의 완전한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정작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들의 이라크전쟁 반대와

자이툰부대의 철군 의견은 무시한 채로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아르빌 계속 주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자이툰부대의 철군계획을 명시한 파병기간연장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정작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손을 들어 줍니다. 차라리 당론으로 채택이나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철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느냐는 질의에 국방부장관은 “철군을 전제로 한다면 융통성이 없어진다”고 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융통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말 바꾸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4월에 비전투병만 파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에 전투병을 파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올해가 아마도 자이툰 파병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파병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철군을 명시하지 않은 연장안이 ‘내용적 철군’이라고 하면서 찬성 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국민들도 등을 돌린 부시에 동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반전평화 여론에 동맹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이툰 철군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편에서야 합니다. 명분 없는 주둔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파병을 한다면 미국이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남한이 하자는 대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파병 연장은 미국 의회에서조차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우리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또다시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연장안에 대해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14인, 반대 60인, 기권 16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34인, 반대 40인, 기권 19인으로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38인, 반대 37인, 기권 17인으로서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잠시 본회의를 정

회하여 저녁 8시 정각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회)

○의장 임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75항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75항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17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되어 보고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1시33분)

○의장 임채정 다음으로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007년도 예산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사일정 제80항~제109항으로 각각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80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주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 특별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항목 중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한 “이체 인력의 인건비 상당액”을 “이체 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로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이관사업 중 본래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 아닌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이관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회운영위에서 제안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기본법안 등 2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니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을 하였거나,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되, 직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을 지정하고, 기금관리 또는 위탁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지정 및 구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그와 별도로 각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 등 위반행위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은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명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목표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 존 함)

○의장 임채정 그러면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 · 박명광 · 이영호 · 신국환 · 황우여 · 박상돈 · 정갑윤 · 이해봉 · 정

성호 · 신상진 · 김애실 의원 발의)

85.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6.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 · 배기선 · 박상돈 · 김종률 · 김재홍 · 이성권 · 정성호 · 이광철 · 이광재 · 장복심 · 우제창 · 이영호 · 안병엽 의원 발의)

87.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1시4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8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박영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박영선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연금보증채무 이행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을 포함하였으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 수지상승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였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에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에 따른 지급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 중 기금운용수익에 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명시하였고,

둘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용용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하여 출연금 반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규정하고,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은 동 기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직불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일반법이고, 소비자 보호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카드 관련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하여 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박병석 의원, 유승민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수정·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 신용협동조합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신탁 예금자보호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합병 및 파산방식 외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되, 계약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회가 건의하는 경우에도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개별 신탁 및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직불 및 선불카드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신탁은 중앙회의

카드 관련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출연범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받은 것에 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과 이상민 의원이 소개한 1건의 청원의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산법 제24조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기존의 한도초과 소유주식에 대한 경과규정은,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되기 전인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초과소유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2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명 금산법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법이다, 종이가 가까운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 온 5% 초과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또 97년 3월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5% 초과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삼성카드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박영선 의원안의 원래 안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원래 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도록 하고 삼성생명의 초

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우리 열린우리당의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삼성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산법 절충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삼성의 불법상태를 해소해 주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산법 24조를 만든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 금산법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때 다른 재벌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현대캐피탈은 모두 5% 이상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오직 삼성만이 이를 정리하지 않고 작년 6월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삼성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에 대한 우리 국회의 굴복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금산법은 개정 자체가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금산법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삼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SK와 소버린 간에 경영권 분쟁사태가 있었을 때 외국인 주주의 공동행보론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적으며 외국인 지분이 높다고만 해서 적대적 M&A의 위협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외국인 지분 비율로만 보면 국민은행은 외국주주 비율이 85.4%,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외국인주주 비율 78.1%, 포스코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67.9%, 에스원 60%로 삼성전자보다 외국인 주주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교체 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는 외국인 주주인 것입니다.

삼성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삼성그룹은 다른 재벌들과 완전히 다른 슈퍼재벌입니다. 10대 그룹 내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매출비중과 순이익비중, 국가 전체 수출액의 5분의 1이 넘는 수출규모, 증권시장 내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4분의 1에 가까운 시가총액 등 삼성의 급성장은 단순한 재벌의 성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굉장히 큼니다.

저번 국정감사 때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재벌의 총수인 이건희 씨가 국정감사에 나온다고 했는데도,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부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르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또 이건희 씨는 자기가 삼성자동차를 잘못해서 5조 원 이상의 부채를 국민에게 지워놓고도 8000억의 자기 개인재산을 회사하는 형식으로 빚진 사람이 마치 무지무지하게 선량한, 우리나라의 빈자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금산법은 삼성을 위한 법이고 삼성 면죄부 법입니다. 종이가 아까운 법입니다. 이 법을 오늘 제정함으로써 삼성의 그동안의 위법상태를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정 다음은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서 금융시장과 나아가서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금융과 산업이 융합되면 거의 언제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역사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 지혜에 따라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법이 바로 금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산법도 5% 이상 지분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독 삼성만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법의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여 개월간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 맞춤형법으로 둔갑되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삼성이 관련법을 위반했으면 이를 시정조치만 하면 될 일인데 삼성의 세습을 안전하게 갈무리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별의별 묘안이 다 동원된 것입니다.

불법 소유하고 있는 5% 이상의 초과지분 처분을 위한 개정안이 분리대응론으로 후퇴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마저도 2년간 유예시키면서 거대 정당의 삼성을 위한 담합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여당은 기존의 분리대응론마저 후퇴시키면서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했다고 하면 한나라당은 억울해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한나라당이 반대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표는 삼성 맞춤형법안을 엄호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산법 논란의 핵심은 처음부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 매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년간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이 유예기간을 얻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해서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도 금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안에 의해서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한 것입니다.

왜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했는지, 또 왜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금산법 부칙에 하위법인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었는지를 따져보면 삼성을 위한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해서 2년 후에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하면 2년 후에 의결권 제한이 15%로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2년간 유예해 주는 문제는 있지만 삼성전자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나라당이 왜 굳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금산법 적용을 받아야 할 삼성생명을 무리수를 두어서까지 재벌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법 영역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이냐 이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미 여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해서 의결권 제한까지 재벌개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금산법보다 약한 공정거래법으로 링을 바꾸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에 굴복한 법입니다. 아니, 삼성을 위한 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산법에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이므로써 금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개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국회 정치권에서 삼성의 힘은 막강한 것

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금융감독위원회도, 국회도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이 국민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절대 삼성의 위법적인 지배와 그것을 옹호하기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 삼성 앞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산법이 원칙을, 입법취지를 살리는 법으로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안 나오기를 제 마음속으로 기대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심상정 의원님과 임종인 의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 법이 아마 약하다고 반대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이 상하다면 제가 더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 협상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법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자세로 해서, 제가 오늘 법안 설명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찬성해 주십사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 법은 오늘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장님께서 찬성표를 던지셔서 가지고 가까스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물론 심상정 의원님과 임종인 의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반쪽자리 절름발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조항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하나의 법으로, 온전한 법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고요.

이 법이 여기서 오늘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정리했던 기업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토론을 거쳐서 협의해서 오늘 여

기까지 오게 된 이 법에 대해서 찬성표 던져 주십시오 함을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33인, 기권 30인으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4.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97.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시09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8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0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1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9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4항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5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6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7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문석호 재정경제위원회 산·태안 출신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교통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법은 현행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과세방식을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세액계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세법은 현행 열한 가지로 열거되어 있는 과세소득을 아홉 가지로 통폐합하는 한편,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용계좌 개설제도를 도입하며,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법은 기관투자자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하는 등 경제 및 사회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본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덕특구 내 첨단 기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유전개발펀드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였고 근로자, 서민층 및 농어민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종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지 사유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추가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구분하는 한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의 최소화 원칙과 연장 사유 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세법은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하고 대중교통 육성사업을 목적조항에 명시하며, 일몰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세법은 납부기한 만료 시점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다음날로 자동 연장하도록 하였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기본관세율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09년 말까지로 일몰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보 필요성 차원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둘째, 수출용원재료관세등환급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전산처리설비에 의한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린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3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4인으로서 법

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1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계동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런 야심한 시간에 법률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소위 말해서 LPG 특소세 폐지법안을 가지고 2년 전의 그 표결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갑자기 다시 여기 서려고 하니까 ‘금관의 예수’ 노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야심한 시각에 절망한 마음으로 택시를 몰고 다닐 그 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저 메마른 손길’

여러분, 정말 이 절망 속에 있는 30만 택시 가족들, 그리고 백만 그 가족들…… LPG 특소세 폐지만 간절히 간절히 바라는 그 택시기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열린우리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모든 당에서 택시기사들을 만날 때 선거공약으로 LPG 특소세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열린우리당 당의장께서도 의정부에서도 성남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LPG 특소세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지도자가 신의를 잃

어버리면 어떡합니까?

2년 전에 LPG 특소세 폐지법안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정말 정부당국에서 이번만 보조금제로 해 줘라 그러면 반드시 택시 살길 찾아 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관리제도 하고 총액임금제도 실시하고 택시종량제도 실시하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지켜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께서도 저렇게 정부가 약속을 하니 이번에는 민주노동당도 거기에 편들겠다고 그러나 만약에 저게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택시들의 염원인 LPG 특소세 폐지하는 데 찬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택시들의 살길을 찾아 주겠다고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또 말을 바꿉니다. LPG 특소세를 폐지해서 정말 세금을 안 매기면 용기를 바꿔 가면서 빼먹을 것이다, 휘발유는 색깔을 바꾸어서 할 수 있지만 LPG는 바꿀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차량용 LPG 택시는 용기가 고착식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뺏다 끼웠다 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판 가스하고도 다릅니다. 오만 이야기를 해 가면서 안 되는 논리를 만드는 것 정말 딱합니다.

여러분, 전 운수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088만원입니다. 지금 택시노동자의 평균임금이 944만원으로 한 달에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제 택시기사들 중에 40%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이제 이 간절한 120만 택시 가족들의 뜻을 우리는 받아 주어야 됩니다. 세수 절감한다고 불과 1800억에서 2200억밖에 안 되는 그 논리, 돈이 많아서 못 도와주겠다고 그 논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도 정말 이 택시노동자들 귀에는 거짓말과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

간절하게 도와 주십시오. 이제 이 어두운 거리, 캄캄한 이 절망의 거리에서 실낱같은 빛을 주십시오. 진정으로 우리 국가가 어두운 곳, 가난한 곳에 있는 우리 120만 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연말 선물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이번에 또 흘러간다면 정말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120만 택시가족들을 정말 실망시키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힘을 줍시다.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

시다.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도와달라는 절절한 애소를 외면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박계동 의원 외 126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입니다.

저는 문석호 의원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하신 가운데 그 내용 중에 포함된 근로장려세제, 일명 EITC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장려세제로 명명된 내용은 법안 제100조의2에서 13에 새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17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보험과 국민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EITC, 즉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ITC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3의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3의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 저는 그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제도를, 법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쳐 두고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이것이 통과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EITC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오늘 중으로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

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이 오늘 통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일곱 나라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빈곤층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고 사회복지에 의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기 싫어하는 빈곤층이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빈곤층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EITC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양의 이런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된 배경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EITC 제도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된 제도로서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이 없이 막연히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입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의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 이런 제도를 왜 오늘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희가 좀 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소득과약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츰 자영업자로 확대해 갈 예정인데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이 30 내지 5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애를 써야지 소득과약률이 높아질 것인지를 보고서 이 제도를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 또 소득과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빈곤층에 속하지만 일일고용자, 임시고용자들의 소득이 과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우리는 소득과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 제도부터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소득과악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들이 일하기 싫은 빈곤층이 아니라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빈곤층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투자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제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우제창 의원입니다.

저는 택시가 사용하는 LPG 부탄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또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절실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또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 여건의 변화 및 교통시스템의 전환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주먹구구식의 미봉책을 통해서 잠시 잠깐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법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택시용 LPG 연료에 대해서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에 시장에 면세유류와 과세유류가 혼재하여 면세유류 부정 유통에 의한 시장 혼란과 왜곡이 우려됩니다.

현재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약 180만대에 달하며, 이중 택시의 등록대수는 24만대에 불과합니다.

택시 LPG만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나머지 LPG 연료를 사용하는 약 160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면세유류를 불법 사용할 우려가 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택시 LPG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에 택시보다도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는 화물차나 버스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산안도 다시 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 LPG 면세를 계기로 현재 유가 보조금조차 받지 못하는 약 32만대의 건설기계 차량이나 약 260만대의 영세 자영업자의 자가용 화물차량까지 면세 요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수송용 차량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과세가 불가능해져서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세수감은 물론 지난 수십년간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 도로 건설, 재정 확보 등을 위해서 추진해 온 정부의 에너지 세제정책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게 됩니다.

한편, 박계동 의원안처럼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더라도 현재 유류세의 약 80% 상당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개선 효과는 약 1% 내외에 불과합니다.

현재 특소세를 면제하여 원가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요금 조정에 반영되어서 택시 이용 고객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택시 업계에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더라도 원가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그마저도 요금 인하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택시 업계 또는 택시운

수 종사자가 얻게 되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4년에도 박계동 의원께서 발의하신 LPG 특소세 면세 법안이 재경위에서 부결한 후에 오늘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택시 업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택시 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택시의 초과 공급과 투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인 경영 방식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의 택시 등록대수는 약 20만 대이며, 운전자는 약 29만 명입니다. 택시 업계가 매년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택시의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시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데 이용객은 날로 감소하니 택시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러한 택시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택시의 증차를 방지하고 택시 수요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적정한 수익을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택시 업계 등 운송업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급 불균형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송 업계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를 토대로 금년 7월에 종합수급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택시 업계가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 LPG 면세와 같은 아무런 원칙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임기응변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일관된 원칙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택시 연료에 대한 특소세 감면이라는 인기영합적인 미봉책을 국회가 선택하게 된다면 택시 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이 앞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

다. 표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안건 처리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안건 처리하기 전에 발언을……)

지금 투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고……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법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투표 방법은 수정안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표결 선언을 했기 때문에…… 표결 선언하면 안 됩니다. 진즉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진작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투표 선언을 했기 때문에……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투표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합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것인데 투표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 방법은 국회법상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국회법상에 규정된 것을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張倫碩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신청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받아 줘야지요.)

양당 수석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법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윤석 의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표결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106인, 반대 83인, 기권 32인으로서 박계동 의원 외 12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2인 중 찬성 107인, 반대 90인, 기권 2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진행의 건

(22시48분)

○의장 임채정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張倫碩 議員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야심한 시각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국회 본회의의 운영, 특히 본회의의 법안에 관한 의사 절차에 관해 매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처리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내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고 의장께서 수용해서 확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99% 이상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 표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본회의에 이미 회부된 법안에 관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국회법 95조에 따른 수정안입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 이미 회부된 의안에 관해서, 회부된 사항에 관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법안을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법 제87조입니다. 국회법 87조를 보면 위원회에서—상임위원회입니다—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 부결된 법안입니다—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중심은 역시 본회의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3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한다면 본회의에 회부해서 심의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본회의 심의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회 의사가 왜곡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된 이 법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 특소세 면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재경위에서 부결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는 아예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30개에 가까운 항목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상정되어서 조금 전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LPG 특소세에 관한 면세 조항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될 대상도 없기 때문에 LPG 면세에 관해서는 이른바 국회법 95조에 따른 수정안은 국회법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느냐 하면 국회법 87조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30인 이상이 연명 발의해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7조에 의한 법안은 별개의 의제, 별개의 사항에 관한 별도의 법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원안과 박계동 의원 외에 다수 한나

라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한 LPG 특소세 면세 법안은 국회법 87조에 따른 별개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법안이기에 때문에 별개의 법안으로 심의 표결 처리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50년 넘는 관행상 87조에 의한 별개의 법안도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수정안이라고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50년 넘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수정안이라고 붙여만 오면 그것이 본회의에 회부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인지, 87조에 의한 별도의 법안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수정안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2개의 법안은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의 법안인 87조에 해당되는 법안의 경우는 별도로 처리하면 그뿐이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법안을 만약 95조의 수정안이라고 취급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하게 되면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가결 선포하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96조가 동일 의제에 관해서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수정안부터 표결하되, 2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지 않고 원안을 가결된 것으로 5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오늘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해서 박계동 의원이 1개의 법안을 별도로 냈는데 만약 10개의 수정안이, 이른바 수정안, 제출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10개의 수정안에 관해서 표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개의 수정안, 물론 별도의 법안입니다. 마는 수정안으로 제출한 경우를 가정해서, 소위 수정안이 10개가 다 부결되어야 원안을 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소위 수정안 중에 1개의 법안이라도 통과가 되면 원래 본회의에 회부된 30개 항

이 넘는 개정안 원안에 관해서는 표결도 하지 않고 의장님께서서는 가결을 선포해야 됩니다, 50년 동안 해 온 관행에 의하면.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될 관행이고 우리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구했던 것은, 이번 LPG 면세 수정안은 수정안이라고 이름 붙여 제출되었지만 87조에 따른 별개 법안이니까 의장님께서서는 87조의 법안으로 취급하셔서 별개로 표결해 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소위 수정안과 원안이 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시다마는, 만약에 LPG 면세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한다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30개가 넘는 개정 조세특례법 원안에 관해서는 표결도 하지 아니하고 통과될 뻔한, 매우 심각한 국회 의사의 왜곡을 초래할 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서는 국회사무처의 조언을 받으셔서 앞으로 수정안의 이름을 붙여서 본회의에 30인 이상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셔서 95조의 수정안인지 87조의 수정안인지를 구분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제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94.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9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97.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시56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기권 4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3인, 기권 4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수

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시01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9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김낙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낙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김낙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자 편의 및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대도시 지역 내 사원임대용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 시 추정 조항이 없어 사후 관리가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추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민영 교도소 및 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일부 사항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나,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에서 놓여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감면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래 공동시설세 등이 감면되던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 전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감면 지원을 계속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

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서갑원 · 이광재 · 노영민 · 송영길 · 이광철 · 정성호 · 우상호 · 김형주 · 배기선 · 한병도 · 최철국 의원 발의)

(23시05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99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의 서갑원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서갑원 산업자원위의 서갑원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편하여 세액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및자

원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동 전입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 석유제품의 주원료인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함으로써 유사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용제 등 일부 석유제품의 품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198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1.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시09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01항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신상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세를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도 활용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7인, 기권 9인으로서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23시12분)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0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진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진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둘째,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개발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체의 참여를 배려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용자, 소속 이주 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의 우선적 공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시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법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둘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을 현행 1000분의 858에서 1000분의 8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제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정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후에 또 지난번 우리가 위원심을 받았다가 명칭과 내용을 좀 바꿔서 통과가 돼서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빚어질 것 같아서요,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반대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지고, 내세웠던 정책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큰 축으로는 행정도시 건설과 그다음에 지방에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세우고 착착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시도는 16대 국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7대 국회에 들어서서 현

재로부터 위원심을 받고 다시 우여곡절 끝에 여당만의 또는 일부 야당의 참여로 해서 반대 속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후속대책법, 일명 정부에서는 행복도시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지금 현재 왜 현 정부의 국민의 지지가 떨어졌는가와 그 내용은 똑같이 일치해 있습니다.

전국의 땅값은 엄청난 속도로 올랐습니다. 땅값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도 역수로 올라버렸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과 연계되어 있는 법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과 골자는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개발절차 규정을 여기다 좀 담아보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정부는 2005년도입니다. 작년도예요. 6월 24일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공공기관의 대지를 전부 팔면 지방 이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이전과 생활편의시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추가비용이 안 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심의기구를 건설교통부 산하에다 두어 가지고 혁신도시건설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국토를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정치적 이슈였던 행정도시 건설과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건설이 안 되니까 지금 각종의 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해서 지금 공공기관들도 수동적으로 지금 지방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마는 그들의 고용조건이 지금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두어야 되겠다, 회계라는 것이 뭘니까? 세금을 더 걸겠다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세금을 더 걸어서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을 일정

부분이라도 채우자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기존의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은 다 물 건너가고 지금 현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저 부동산 가격, 오죽하면 환매 조건부나 토지임대부나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있는 그 원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법을 또 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신행정도시의 건설이라는 것들이 목표는 좋았지만 내용이 부적절해서 많은 병폐를 남겼던 것들이 또 커다란 병폐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저쪽 경상도로 간다고 할 때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옮기기 때문에 지방이 전부 단결합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대립합니다. 지방으로 가야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도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경상남도과 경상북도는 서로 합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로 갈 것이냐 남도로 갈 것이냐 이것을 두고는 남도와 북도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또 경상북도로 결정되었으면 울진으로 갈 것이냐, 저쪽 울산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놓고 군끼리 대결해 버립니다. 군끼리 대결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느 면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현재 경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전모입니다.

또 지금 그것이 현재 강원도에서 원주가 좋냐 춘천이 좋냐 강릉이 좋냐 이것을 놓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면과 군과 시가 대립하고 온 나라가 지역과 수도가 대립하고 이것이 대립주의의 표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하나로 융합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 이전자들은 이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면, 국회가 150일이 열리는데 16개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여기에 와야 됩니다. 차 타고 왔다갔다 해야 돼요. 공공기관도 지금 서울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교통 문제, 고용 문제, 재정 문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법이 이 후속 대책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은 반드시 반대를 하고 새롭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33인, 반대 56인, 기권 17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1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내지 제108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상정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109.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23시24분)

○의장 임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9항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우제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경기 용인갑의 우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고액권 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만 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30배 이상, 소비자물가가 11배 이상 상승했지만 현재 최고액권인 1만 원권은 30년 이상 장기간 액면고정으로 경제규모와 소득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맞는 화폐 보유가 필요합니다.

둘째,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서 거래매개로서 화폐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1만 원권이 발행된 1973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11배의 이상 상승함에 따라서 현용 최고액권인 1만 원권은 거래매개 기능과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수표 사용 대신 고액권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발행규모는 연간 10억 장 이상에 달해서 이를 10만 원권 화폐로 전환 시에 연간 40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은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가 5만 원권 및 10만 원권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48인, 기권 20

인으로서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3시30분)

○의장 임채정 다음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263회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110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 제26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10항 제26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제264회 국회(임시회)를 12월 26일 오후 4시에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1분 산회)

제263회국회(임시회) 의사일정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12.22(금) 10:00	1. 2007년도 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법률안 등 안건처리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장기갑	장길부	장봉균	장성중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문 병 호 문 희 상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주 호 영

찬성 의원(18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문 병 호 문 희 상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박 재 완 이 재 오 조 정 식 최 인 기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문 병 두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복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반대 의원(2인)

고 조 흥 김 광 원

기권 의원(4인)

김 기 춘 김 성 조 박 성 범 이 윤 성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훈 김 중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두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복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제종길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최철국	한선교	허천	홍미영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홍창선	황진하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반대 의원(3인)

고조홍 김기춘 이상배

기권 의원(6인)

김정권 박성범 박찬숙 이상경
정화원 황우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1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광 박성범 박세환
 박기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순자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기 최영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권오을
기권 의원(3인)
 박상돈 이계진 이상경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4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문희광 박상돈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승환
 박성범 박세환 박찬석 박찬숙
 박영선 박재완 배기선 배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광철 이낙연 이병석 이상민
 이승희 이윤성 이인제 이주영
 임채정 장영달 정갑윤 정의화
 정진섭 조정식 조영진 영성
 최규성 최영성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원 혜 영
이 혜 훈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장 복 심	장 영 달	전 여 옥	전 재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병 국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정 진 섭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태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복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황 우 여	황 진 하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기권 의원(2인)				장 영 달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이 강 두	정 화 원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호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학 진
문 희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기권 의원(1인)

김 성 곤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근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맹형규	문학진	문희회	문희상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김교홍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신국환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김재원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김충환	김대년	김태홍	김태환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유기준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문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박재완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배기선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서상기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신국환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신재엽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안상수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이혜훈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양승조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오영식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우제창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유선호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유정복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이강두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조성태	조순형	주성영	주호영	이계안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이기우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이상경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이성권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이원복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이인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반대 의원(6인)				이주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이영순	이주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천영세	최순영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기권 의원(1인)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황우여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98인)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영춘 박찬석 이인영 정장선
 황우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화원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엄호성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우원식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유기준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유인태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윤두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경재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광철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낙연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상배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시종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윤성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인제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주영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임해규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전병헌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정동채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정성호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정진석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정화원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조정식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진영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최규식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최연희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최철국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홍미영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황진하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기권 의원(1인)
 권철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중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찬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문희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윤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이정복 이경숙 이경재
 윤호중 이강두 이계진 이광철
 이계경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균현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명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성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용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6인)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기권 의원(2인)

김성조 이상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20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응래
 노현송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이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이계안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태년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응래 맹형규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기우 이광철 이균현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은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중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영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재 형	홍 창 선	

반대 의원(7인)

강 기 갑	권 영 길	단 병 호	배 일 도
이 영 순	천 영 세	최 순 영	

기권 의원(2인)

진 수 희	차 명 진
-------	-------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중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중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홍 재 형	홍 창 선

기권 의원(4인)

김 영 선	맹 형 규	이 원 복	정 화 원
-------	-------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곽 성 문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중 룰	김 중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학진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문희상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이광철	이균현	이기우	이낙연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배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안영근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이영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양형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우원식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이종걸	이종구	임종인	임해규	유기준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이진구	이혜훈	임종달	장윤석	유인태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재희	유호중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이계경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이계현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이명규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이상득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정화원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이승희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이윤성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이인제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종구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이혜훈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한선교	허천	홍재형	홍창선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경수
기권 의원(3인)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장향숙
이근식	이용희	이원복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갑윤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성호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진석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정화원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조정식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진영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규식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최연희
							한선교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허 천 홍재형 홍창선
기권 의원(2인)
 김성조 오제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곽성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재형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김용갑 이승희

기권 의원(5인)

고홍길 김기춘 이상배 이인제
 정화원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
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7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곽성문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종 인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 성 태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용 갑

기권 의원(10인)

고 경 화	고 홍 길	김 기 춘	김 성 조
송 영 선	안 상 수	이 계 안	이 상 배
정 화 원	최 병 국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곽 성 문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학 진	문 회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심 재 덕 이 계 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곽 성 문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기 춘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형 주 김 회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업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흥 재 형 흥 창 선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권 오 을

찬성 의원(162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홍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회 선 김 회 정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봉 숙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형 일
 업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배 이 시 종 이 윤 성 이 성 구
 이 재 오 이 주 호 이 경 수 이 용 회
 이 주 호 이 주 호 이 주 호 이 인 기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진 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정 병 현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성 영 지 병 문 제 종 길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형 근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형 근 제 종 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차명진
 천영세 최성 최재성 최천 최성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병국
 최순영 최연회 최인기 최재성 최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흥재형 흥창선

반대 의원(14인)

강 기 갑 권 선 택 권 영 길 김 재 윤
 노 회 찬 단 병 호 안 민 석 양 승 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이 계 안 이 영 순 천 영 세 최 순 영
 최 연 희 현 애 자
기권 의원(8인)
 고 진 화 박 세 환 이 광 철 이 상 경
 이 주 영 전 재 희 정 갑 윤 정 화 원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재 성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창 선

기권 의원(2인)

우 원 식 유 인 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해 규 장 경 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우 제 건 유 정 복
 유 기 흥 유 인 태 윤 호 중 이 강 두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계 안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고 경 화 심 재 철 양 형 일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홍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속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미 경 이 상 경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복
 이 승 회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윤 성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재 오 이 진 구 임 해 규 장 경 수
 이 주 호 이 진 구 장 윤 석 장 향 속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속
 전 병 현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재 성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허 천 현
 현 애 자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김 양 수 김 용 갑 김 정 권 이 용 회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남 경 필
 노 현 송 노 회 찬 류 근 찬 맹 형 규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남경필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류근찬 맹형규 문희 박명환 문희상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문희 상문희 박기춘 박명광
 우제창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민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이주호 이진구 임해규 장경수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조성태 이성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조순형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해규
 허천 현애자 홍재형 홍창선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황진하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진석 정순형
 정청래 제종길 조성태 진영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1인)

박세환

기권 의원(2인)

김영선 이상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희 상문희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8인)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2인)

장향숙 정화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지병문	진영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원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현애자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전병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두환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종구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해규	장경수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재희	장향숙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병국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종복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지병문	진영	천영세	
최규식	최병국	최성원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1인)

배일도

기권 의원(3인)

김정권 박승환 이재오
 (홍재형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5인, 기권 의원 3인임)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용규 한광원 현애자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16인)

권경석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재원 김효석 류근찬
 박세환 박승환 박찬석 이승희
 정진석 정화원 조순형 한선교

기권 의원(16인)

강기정 고진화 권선택 김애실
 박재완 박찬숙 손봉숙 송영선
 안상수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임해규 정갑윤 최연희 허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26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양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순자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청래 정형근 제종길 조성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57인)

찬성 의원(144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명규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7인)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6인)

김한길	박재완	안민석	이경숙
이승희	정화원		

홍재형 홍창선

반대 의원(37인)

강기갑	권영길	김낙성	김낙순
김병호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태홍	단병호
류근찬	문희	박세환	박승환
손봉숙	송영선	안상수	안홍준
엄호성	이경숙	이성구	이승희
이영순	이원복	장영달	장향숙
정의화	정진석	조순형	주호영
천영세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현애자			

기권 의원(16인)

고조홍	고진화	권철현	김부겸
김정권	김형주	나정원	맹형규
박순자	박재완	심재철	이시종
임해규	전재희	정청래	정화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0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고경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김교홍	김덕규
김덕룡	김성곤	김양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오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문석호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찬석
박찬숙	배기선	백원우	서병수
서상기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유재건
유필우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기우	이명규
이병석	이상민	이석현	이성권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전병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형근
제종길	조성태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최규성	최규식
최용규	한광원	한선교	허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27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고홍길	곽성문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성범	박진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윤희중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지병문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철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한광원 허천 홍창선

반대 의원(5인)

김무성 김용갑 이경제 이승희
 한선교

기권 의원(22인)

고경화 고조홍 김기춘 김병호
 김성곤 김애실 김종인 김형오
 박상돈 박재완 박찬숙 심재철
 유필우 윤두환 이종구 정갑윤
 정희수 조순형 진수희 차명진
 황우여 황진하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김애실 박재완 이승희 정화원
 차명진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0인)

장기갑 장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선택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6인)

장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진병헌 진여옥 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무성

기권 의원(1인)

정화원

(김영숙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 의원 156인, 기권 의원 1인임)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용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임종인 장영달 전여옥 정갑윤
 전병헌 전여옥 정의화 정장선
 정병국 정성호 정진섭 정형근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희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6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고경화 고조흥 고홍길
 광성문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석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動物保護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3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조흥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희석
 문희상 문희상 문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안민석 염동연 우윤근 유인태 윤호중 이광철 이상득 이성권 이인기 이주호 장경수 전여옥 정성호 정진섭 제종길 진영 최구식 최순영 한광원
 심재엽 안영근 오영식 우제항 유재건 이경숙 이근식 이상민 이승희 이인영 이진구 장복심 전재희 정의화 정형근 조순형 차명진 최규식 최연희 한선교
 심재철 양승조 우상호 유기준 유필우 이계진 이명규 이상배 이윤성 이재오 임종석 장영달 정갑윤 정종복 정화원 지병문 천정배 최병국 최용규 허천
 안경률 양형일 우원식 유승민 윤두환 이광재 이상경 이성구 이은영 이종구 임종인 전병헌 정병국 정진석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성국 최철국 홍창선

기권 의원(1인)

박찬석

심재엽 양승조 우상호 유기준 유필우 이계진 이명규 이상배 이윤성 이재오 임종석 장영달 정갑윤 정장선 정형근 지병문 천정배 최병국 최용규 허천
 심재철 양형일 우원식 유승민 윤두환 이광재 이상경 이성구 이은영 이종구 임종인 전병헌 정병국 정종복 정희수 제종길 진영 최구식 최순영 한광원
 안경률 염동연 우윤근 유인태 윤호중 이광철 이상득 이성권 이인기 이주호 장경수 전여옥 정성호 정진석 정희수 정진섭 조순형 차명진 최규식 최연희 한선교
 안영근 오영식 우제항 유재건 이경숙 이근식 이상민 이승희 이인영 이진구 장복심 전재희 정의화 정진섭 조순형 차명진 최규식 최연희 한선교

기권 의원(2인)

안민석 정화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갑 고조홍 권선택 김기춘 김명자 김성곤 김영덕 김원웅 김정권 김충환 김학송 노웅래 문학진 박기춘 박승환 박찬숙 배일도 서상기 신국환
 강기정 고홍길 권오을 김낙성 김무성 김성조 김영주 김재경 김종률 김태년 김한길 노현송 문희박 병석 박재완 박형준 변재일 선병렬 신기남
 강길부 광성문 권철현 김낙순 김부겸 김애실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형오 단병호 문희상 박상돈 박진 박희태 서갑원 손봉숙 신상진
 강봉균 권경석 김교홍 김덕규 김선미 김양수 김우남 김재홍 김춘진 김태환 김희정 민병두 박성범 박찬석 배기선 서병수 송영선 심재덕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강기갑 고경화 권경석 김교홍 김덕규 김부겸 김애실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형오 단병호 문희상 박상돈 박진 박기선 서병수 송영선
 강기정 고조홍 권선택 김기춘 김명자 김무성 김성곤 김영덕 김원웅 김정권 김충환 김학송 노웅래 문학진 박기춘 박승환 박형준 변재일 선병렬 신기남
 강길부 고홍길 권오을 김낙성 김무성 김성곤 김영덕 김원웅 김정권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노현송 문희박 병석 박재완 박희태 서갑원 손봉숙 신상진
 강봉균 광성문 권철현 김낙순 김병호 김성조 김영주 김재경 김종률 김태년 김한길 노현송 문희박 병석 박재완 박희태 서갑원 손봉숙 신상진

심재덕 안민석 염동연 우윤근 유인태 윤호중 이광철 이상득 이성권 이인기 이종구 임종인 전병헌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지병문 천정배 최병국 최용규 허천

심재엽 안영근 오영식 우제항 유재건 이경숙 이근식 이상민 이승희 이인영 이주호 장경수 전여옥 정성호 정진석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성홍창선

심재철 양승조 우상호 유기준 유필우 이계진 이명규 이상배 이윤성 이재오 이진구 장복심 전재희 정의화 정진섭 제종길 진영 최구식 최순영 한광원 황진하

안경률 양형일 우원식 유승민 윤두환 이광재 이상경 이은영 이재웅 임종석 장영달 정갑윤 정장선 정형근 조순형 차명진 최규식 최연희 한선교

반대 의원(1인)

박찬숙

신국환 심재엽 안영근 염동연 우윤근 유인태 윤호중 이광재 이상경 이성구 이은영 이재웅 임종인 전여옥 정성호 정진석 정희수 진수희 최구식 최순영 한광원 황진하

신기남 심재철 양승조 오영식 우제항 유재건 이강두 이광철 이상득 이성권 이인기 이종구 이주호 장경수 전재희 정의화 정진섭 제종길 진영 최규식 최연희 한선교

신상진 안경률 양형일 우상호 유기준 이경숙 이근식 이상민 이승희 이인영 이주호 이진구 장복심 정갑윤 정장선 정형근 조순형 천정배 최병국 최용규 허천

심재덕 안민석 염호성 우원식 유승민 윤두환 이계진 이명규 이상배 이윤성 이재오 이진구 전병헌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지병문 최경환 최성홍창선

기권 의원(1인)

장기갑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7인)

강기정 고조권 김낙순 김병호 김성조 김영덕 김원웅 김정권 김충환 김학송 노웅래 문학진 박기춘 박승환 박찬숙 배일도 서상기

강길부 고권철 김덕규 김부겸 김송자 김영주 김재경 김종률 김태년 김한길 노현송 문희박 병석 박재완 박형준 선병렬

강봉균 광성문 김교홍 김명자 김선미 김애실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형오 단병호 문희상 박상돈 박진 배기태 서갑원 손봉숙

고경화 권선택 김낙성 김무성 김성곤 김양수 김우남 김재홍 김춘진 김태환 김희정 문병호 민병두 박성범 박찬석 배기선 서병수 송영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2인)

강기갑 고경화 권경석 김교홍 김덕규 김부겸 김송자 김영선 김원웅 김정권 김충환 김학송 노웅래 문희박 박병석 박재완 박형준

강기정 고조권 권선택 김기춘 김명자 김선미 김애실 김영주 김재경 김종률 김태년 김한길 노현송 문희상 박상돈 박진 배기태

강길부 고홍길 권오을 김낙성 김무성 김성곤 김양수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형오 문병호 민병두 박성범 박찬석 배기선

강봉균 광성문 권철현 김낙순 김병호 김성조 김영덕 김우남 김재홍 김춘진 김태환 김희정 문학진 박기춘 박승환 박찬숙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선병렬 서손봉숙 서송영선 서신국환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우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진 유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강두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성구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정장선 정종복 정희수 제종길
 지병문 진수희 최규식 최병국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최경환 최구식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최성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최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차명진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인태
 유제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희수 제종길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창선
 황진하

○기르느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기권 의원(1인)

김덕규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학진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노웅래	노현송	문학진	문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진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심재엽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유재건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이경숙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유승민	유인태	유필우	윤두환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윤성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성권	이승희	이윤성	이은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전재희	정갑윤	정두연	정병국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정갑윤	정두연	정병국	정성호
제종길	조순형	지병문	진수희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진영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조순형	지병문	진수희	진영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홍창선	황진하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홍미영

기권 의원(2인)

김애실 정화원

반대 의원(5인)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기권 의원(3인)

차명진 최순영 현애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54인)

강기정	강길부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6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장 기 갑	장 기 정	장 길 부	고 경 화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송 자	고 조 흥	고 흥 길	곽 성 문	고 권 경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권 철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정 권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현 미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형 주	김 회 정	노 웅 래	노 현 송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용 갑
노 회 찬	단 병 호	문 학 진	문 희 석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김 재 홍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종 인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재 완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회 정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문 학 진	문 희 석	문 회 상	민 병 두
손 봉 숙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심 재 덕	심 재 엽	안 민 석	안 영 근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우 제 향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안 민 석	안 영 근	양 승 조	양 형 일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이 승 희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유 재 건	유 필 우	유 윤 두	윤 호 중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임 종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진 병 현	진 여 옥	진 재 회	정 갑 윤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이 영 순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조 순 형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장 영 달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한 광 원	한 선 교	현 애 자	홍 미 영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홍 창 선	황 진 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순 형	주 호 영

기권 의원(2인)

김 교 흥 임 종 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3인)

김형오 이 상 배 차 명 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창선 황진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재완 박진 배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정 강길부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단병호
 문학진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성호 정진석 정화원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 성 태 조 순 형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홍 미 영 홍 창 선
황 진 하

반대 의원(6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이 영 순
천 영 세 현 애 자

기권 의원(2인)

신 상 진 정 갑 윤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홍 미 영
홍 창 선 황 진 하

반대 의원(7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단 병 호
이 영 순 천 영 세 현 애 자

기권 의원(3인)

김 정 권 박 세 환 정 갑 윤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6인)

강 기 정 강 길 부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종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학 진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회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성호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정종복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70인)

장기갑 장길부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4인)

장기갑 장길부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문학진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박재완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낙연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상득 이상배 이윤성 이재오 이경숙
 이명규 이성권 이승희 이운성 이낙연 이혜훈 이상배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혜훈 이상배 이영순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종석 임종인 이혜훈 이화영 임종석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장영달 장윤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성호 정진섭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진섭 장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희수 주호영 정중복 정진석 정희수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영 차명진 정형근 정화원 정희영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주호영 최규식 최연희 조성태 조순형
 지병문 진수희 최구식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천영세 천정배 최순영 최연희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애실

박상돈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광철 이근식 이상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영순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성호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정중복 정진석 정희수 제종길
 정형근 정화원 정희영 지병문
 조성태 조순형 주호영 최명진
 최규식 최연희 최병국 최인기
 천정배 최구식 최연희 최인기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이계진 정갑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8인)

강기갑 강길부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길부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혁규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용 갑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중 료 김 춘 진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현 미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재 완 박 형 준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응 래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희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상 철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찬 석 박 찬 숙
 안 민 석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서 갑 원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상 호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유 기 준 송 영 선 신 기 남 신 학 용 심 재 덕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흥 준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영 순 이 윤 성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경 이 상 득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중 인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성 권 이 승 희
 장 경 수 장 북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은 영 이 인 기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회 장 장 선 정 장 래 장 윤 석 장 경 수
 정 갑 윤 정 두 언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청 래 장 북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헌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태 정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성 태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조 순 형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성 태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조 순 형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최 연 회 최 인 기 최 철 국 한 광 원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한 선 교 현 애 자 흥 미 영 흥 재 형 조 순 형 주 호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흥 창 선 황 진 하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한 광 원 최 규 식 최 연 회 최 철 국 한 선 교 최 순 영
 흥 창 선 황 진 하 흥 미 영 흥 재 형 한 광 원 흥 창 선 흥 창 선

기권 의원(2인)

이 해 훈 정 화 원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성 중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정 권 김 중 료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종 석 장 경 수
 장 북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성 태
 조 순 형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현 애 자 흥 미 영 흥 재 형 한 광 원
 황 진 하 흥 창 선 흥 창 선

기권 의원(4인)

권 경 석 박 형 준 신 상 진 임 인 배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46인)

강 길 부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중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주호영
 지병문 진영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14인)

강기갑 권영길 김병호 김애실
 단병호 문희박 박찬숙 박형준
 이계진 이영순 진수희 차명진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5인)

강성종 김재경 송영선 이종구
 정화원

찬성 의원(166인)

강기갑 강길부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광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중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주호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병국 정성호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2인)

신상진 이상배

○勞働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석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춘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기권 의원(2인)

강성종 박형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52인)

강기정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 선 교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반대 의원(10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단 병 호
 신 상 진 이 영 순 임 중 인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5인)
 강 성 중 김 애 실 김 정 권 문 병 호
 안 상 수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반대 의원(10인)

강 기 갑 권 영 길 김 중 룰 노 회 찬
 단 병 호 이 영 순 임 중 인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4인)
 강 성 중 김 정 권 문 병 호 안 상 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기 정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노 웅 래 노 현 송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민 석 안 흥 준
 양 승 조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중 이 원 복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혜 훈 임 인 배 임 중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중 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정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문 병 호 문 회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안 민 석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원 복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황 진 하		

기권 의원(6인)
 강 성 종 김 정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이 혜 훈 정 두 언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재 웅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임 인 배	임 종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동 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선 교	홍 미 영	홍 재 형

반대 의원(9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단 병 호
이 영 순	임 종 인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13인)

권 경 석	권 철 현	김 애 실	김 용 갑
김 정 권	송 영 선	심 재 철	안 상 수
이 원 복	이 진 구	이 혜 훈	정 갑 윤
정 두 언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 운영등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53인)

강 기 정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곽 성 문	권 오 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회 정	노 웅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안 민 석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두 환	윤 호 중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1인)

강 기 갑	강 성 종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혁 규	김 현 미
노 웅 래	노 현 송	단 병 호	문 병 호
문 희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승민 유재건 이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병국
 정성호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철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기권 의원(2인)

이상배 현애자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이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명규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갑윤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종복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안상수 정동채 주호영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5인)

강기갑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법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강기갑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중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기권 의원(1인)

변재일

(조성래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
 원 169인, 찬성 의원 168인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4인)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선미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중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황진하

반대 의원(6인)

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기권 의원(3인)

강성종 김성조 박세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2인)

강기갑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운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단병호 박세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기갑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운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권	이상민
이승희	이시종	이성권	이승희
이은영	이인기	이은영	이인기
이재웅	이종걸	이재웅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진구	이혜훈
임종석	임종인	임종인	임해규
장복심	장영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병국	정성호
정진석	정진섭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제종길	조성태
조정식	주성영	주성영	지병문
진영	차명진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성	최성	최순영
최재성	최철국	최재성	최철국
허천	홍미영	홍미영	최천
황우여	황진하	황진하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박세환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박세환
기권 의원(1인)
 배일도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강기갑	강성종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희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박세환

(홍재형 의원 버튼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4인, 반대 의원 1인임)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명규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강성종 고흥길 노현송 장향숙
 정화원

○大都市圏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고경화 고조홍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단병호
 문희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재향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윤호중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
 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9인)

고경화 고조홍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근
 김성조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희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두환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종석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원웅

기권 의원(7인)

강기갑 강성종 노회찬 임종인
 정청래 천영세 현애자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효석
 김희정 남경필 노용래 노회찬
 단병호 문희상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성범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우원식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두환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광철 이명규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병국 정성호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최규성 최병국 최인기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인)

김성곤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
 대출·관리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강기갑 고경화 고조홍 고홍길
 광성문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조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19인)

고경화 광성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성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선 김영숙 김영춘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륜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형 오 김 희 정 남 경 필
 노 응 래 노 현 송 문 희 상 문 희 상
 박 계 동 박 근 혜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상 기 송 영 선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륜
 안 영 근 양 형 일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제 항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시 종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해 규 장 복 심
 장 윤 석 전 여 옥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병 국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화 원 정 희 수 조 성 태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진 영
 차 명 진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허 천
 허 태 열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창 일 권 영 길
 김 낙 순 김 원 용 김 재 윤 김 종 인
 김 현 미 김 형 주 노 회 찬 단 병 호
 박 찬 석 배 일 도 선 병 렬 손 봉 숙
 안 민 석 안 홍 준 우 원 식 유 승 회
 이 광 철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영 순
 이 인 영 이 재 오 임 종 인 장 향 숙
 정 청 래 천 영 세 최 규 성 최 순 영
 현 애 자 홍 미 영

기권 의원(22인)

김 교 홍 김 애 실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효 석 박 기 춘 신 기 남 안 택 수
 양 승 조 이 군 현 이 상 경 장 경 수
 전 재 회 정 갑 윤 정 성 호 제 종 길
 진 수 회 최 구 식 한 광 원 한 선 교
 홍 재 형 홍 창 선

찬성 의원(114인)

강 재 섭 고 경 화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노 현 송 류 근 찬 문 희 상 문 희 상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희 태 배 기 선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송 영 선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륜 안 영 근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건 영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식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채 정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여 옥 정 동 채
 정 병 국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형 근 정 화 원 체 종 길 조 성 태
 조 순 형 주 성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철 국 허 천 홍 재 형 홍 창 선

반대 의원(60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성 종 강 창 일
 고 진 화 권 영 길 권 오 을 김 교 홍
 김 낙 순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원 용 김 재 윤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노 회 찬 단 병 호 박 찬 석 배 일 도
 백 원 우 선 병 렬 손 봉 숙 심 상 정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오 영 식
 우 원 식 유 기 홍 유 승 회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광 철 이 낙 연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인 영
 이 재 오 임 종 석 임 종 인 임 해 규
 장 향 숙 정 청 래 조 정 식 진 영
 천 영 세 최 규 성 최 순 영 최 인 기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190인)

최재성	최재천	현애자	홍미영
기권 의원(16인)			
김정권	박기춘	박성범	박영선
신기남	윤호중	이계경	이계진
이원복	장경수	정갑윤	정두언
정성호	진수희	한광원	한선교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34인)

강재섭	고경화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성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희
문희상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은영
이인기	이인제	이재웅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병국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40인)

강기갑	강성종	강창일	고진화
권영길	김낙순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노회찬	단병호	박찬석	배일도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우원식	유승희	이계안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재오	임종인
임해규	장항숙	정청래	천영세
최순영	최인기	현애자	홍미영

기권 의원(18인)

강기정	김교홍	김애실	김정권
문병호	박기춘	박영선	신기남
이계경	이계진	이목희	이인영
정두언	정성호	제종길	진수희
한선교	홍재형		

(김영선 의원석 버튼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192인, 기권 의원 18인임)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38인)

강재섭	고경화	고진화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낙성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경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희	문희상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성범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희태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규택	이근식	이낙연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은영 이인기
 이인제 이재용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병국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진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허천 허태열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37인)

강기갑 강성종 강창일 권영길
 김낙순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노회찬
 단병호 박찬석 배일도 선병렬
 손봉숙 심상정 안민석 안홍준
 우원식 유승희 이계안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영순 이원영
 이재오 임종인 임해규 장항숙
 정청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홍미영

기권 의원(17인)

강기정 김교홍 김애실 김정권
 문병호 박영선 신기남 이계경
 이계진 이인영 정두언 정성호
 제종길 진수희 한선교 홍재형
 홍창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8인)

강기갑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현송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중식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이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항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강성종 김애실 배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66인)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학진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국환	신중식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철국	한병도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찬성 의원(198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석호
문학진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상돈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상기	신국환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반대 의원(4인)

이인제	정중복	조순형	한선교
-----	-----	-----	-----

기권 의원(11인)

강기갑	강성종	권영길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신상진	정청래
최경환	최순영	현애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서병수 유승민

기권 의원(3인)
 강성종 박세환 박찬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신국환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반대 의원(1인)

김광원

기권 의원(2인)

강성종 김성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박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명광	상돈	세환	영선	낙순	덕규	동철	명자
재완	종근	박진	찬석	무성	병호	부결	석준
찬숙	형준	배기선	배일도	선미	성곤	성조	송자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양수	영선	영숙	영주
신국환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영춘	용갑	우남	원기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원웅	재경	재운	정권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정훈	김종률	김태홍	김진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충환	김태년	김희선	김희정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나경원	남경필	노용래	노현송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노회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이강두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신국환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이재오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장선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이인제	이재오	이종걸	이종구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기권 의원(3인)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강성종	이해봉	정화원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낙순	덕규	동철	명자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무성	병호	부결	석준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선미	성곤	성조	송자
				양수	영선	영숙	영주
				영춘	용갑	우남	원기
				원웅	재경	재운	정권
				정훈	김종률	김태홍	김진
				충환	김태년	김희선	김희정
				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용래	노현송
				노회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신국환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강 성 종 이 해 봉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회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신 국 환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중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2인)

강 성 종	고 흥 길	곽 성 문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용 갑	박 세 환	신 상 진
유 승 민	이 상 득	주 호 영	최 경 환

기권 의원(4인)

김 기 춘	김 석 준	박 찬 숙	이 종 구
-------	-------	-------	-------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162인)

강 봉 균	강 재 섭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흥 길	곽 성 문	권 경 석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희 선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영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안 경 룰	안 민 석
안 상 수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주 호
 이 진 구 임 종 석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채 일 병 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홍 미 영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33인)

강 기 갑 강 성 종 권 영 길 권 영 세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애 실 김 영 선
 김 용 갑 김 원 웅 김 정 훈 김 종 룰
 나 경 원 노 회 찬 박 계 동 박 세 환
 신 상 진 심 상 정 안 홍 준 유 승 민
 이 영 순 이 원 복 이 주 영 임 종 인
 임 해 규 장 윤 석 정 청 래 주 호 영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 의원(30인)

강 기 정 강 창 일 고 진 화 권 오 을
 김 형 주 김 회 정 문 학 진 문 회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서 병 수
 송 영 선 신 국 환 심 재 업 심 재 철
 양 승 조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회
 이 계 경 이 계 진 이 종 구 이 해 봉
 장 영 달 전 여 옥 진 수 회 최 용 규
 허 천 홍 재 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9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광 성 문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김 광 원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구
 김 동 철 김 명 자 김 김 무 성 김 김 병 호
 김 부 겹 김 석 준 김 김 선 미 김 김 성 곤
 김 애 실 김 양 수 김 김 영 주 김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김 원 웅 김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훈 김 김 종 룰 김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김 태 년 김 김 태 흥
 김 현 미 김 형 주 김 김 희 선 김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노 영 민 노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류 류 근 찬 문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문 회 박 박 계 동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박 명 광 박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영 선 박 박 재 완 박 박 진
 박 찬 석 박 형 준 배 배 일 도 백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서 상 기 선 선 병 털
 손 봉 숙 송 영 선 신 신 국 환 신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심 상 정 심 심 재 덕 심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룰 안 안 민 석 안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양 형 일 엄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우 원 식 우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유 기 준 유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유 승 회 유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유 필 우 윤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강 두 이 이 강 래 이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이 계 안 이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이 균 현 이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이 미 경 이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이 상 민 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시 종 이 이 영 순 이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이 인 기 이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이 종 구 이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해 봉 이 이 해 찬 이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장 경 수 장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장 향 숙 장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정 두 언 정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정 의 화 정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정 진 섭 정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조 순 형 주 주 성 영
 지 병 문 채 일 병 친 친 영 세 천 천 정 배
 채 일 병 천 영 세 천 천 병 국 최 최 성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최 규 식 최 최 재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최 용 규 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한 병 도 한 한 선 교 허 허 천
 허 태 열 현 현 애 자 홍 홍 미 영 홍 홍 재 형
 홍 창 선 황 황 우 여 황 황 진 하

반대 의원(10인)

고 홍 길 권 철 현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용 갑 김 학 송 박 찬 숙 안 상 수
 임 해 규 주 호 영

기권 의원(8인)

강 성 중 김 교 홍 김 기 춘 이 상 배
 이 원 복 이 주 호 정 갑 윤 정 문 현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순 형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채 형 홍 창 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94인)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광 성 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세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민 석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시 중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기권 의원(13인)

강 기 갑 강 성 중 권 영 길 노 회 찬
 박 계 동 심 상 정 안 상 수 이 영 순
 이 원 복 이 해 찬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195인)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선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룰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박 근 혜 박 명 광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유기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이해봉	이해찬	임종석	임종인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전여옥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최경환	최규성	최병국	최성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구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기권 의원(14인)

강기갑	강성종	권영길	김용갑
노회찬	심상정	안상수	이경재
이영순	정갑윤	천영세	최규식
최순영	현애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04인)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해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11인)

강기갑	강성종	권영길	노회찬
-----	-----	-----	-----

심 상 정 윤 건 영 이 상 배 이 영 순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심 재 덕 양 형 일 염 동 연 오 제 세
 우 제 창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기 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용 회 이 은 영
 이 중 길 이 해 찬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정 성 호 제 종 길 조 순 형 조 정 식
 지 병 문 천 정 배 최 규 식 최 성 도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
 정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106인)

강 재 섭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덕 룡 김 무 성 김 병 호
 김 석 준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희 박 계 동 박 근 혜
 박 세 환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박 형 준 배 일 도 서 병 수
 서 상 기 송 영 선 신 상 진 심 재 업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흥 준 엄 호 성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정 복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원 복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임 해 규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종 복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정 희 수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연 회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83인)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형 주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선 병 렬 신 국 환 신 학 용

기권 의원(3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권 영 길 김 낙 순
 김 부 겸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종 룡
 김 중 인 김 춘 진 노 회 찬 문 학 진
 서 갑 원 손 봉 숙 심 상 정 양 승 조
 오 영 식 원 혜 영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강 래 이 영 순 이 원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전 병 현 정 장 선 정 진 석
 천 영 세 최 규 성 최 순 영 현 애 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107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김 교 흥 김 근 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송 자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윤
 김 종 룡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흥
 김 한 길 김 현 미 김 희 선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문 병 호 문 석 호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상 돈
 박 영 선 박 찬 석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선 병 렬 신 국 환 신 학 용
 심 재 덕 안 민 석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제 창 원 혜 영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시 중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중 길
 이 해 찬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재희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정몽준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지병문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용규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홍미영	김송자	김애실	김영주	김영춘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김용갑	김우남	김원웅	김재경

반대 의원(90인)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김재운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철현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광원	김기춘	김낙성	김무성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정권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김정훈	김종인	김충환	김태년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문희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류근찬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세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서병수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신상진	심재엽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홍준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이강두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이균현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이원복	이인기	이재오	이주영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이주호	이진구	임해규	장윤석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종복	정진섭	정창래	정화원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정희수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진영	차명진	채일병	최경환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천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허태열	황진하			이상배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기권 의원(25인)

강기갑	강재섭	권영길	권오을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김낙순	김양수	김재경	김형주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나경원	노회찬	문학진	서갑원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손봉숙	심상정	이영순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석
이해봉	전병헌	정문헌	정진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연희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현애자				전여옥	전재희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창래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한선교	허천	허태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영길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7인)
 강성중 김태년 김형오 박세환
 서상기 정갑윤 정화원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희수 체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영선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반대 의원(1인)

김영선

기권 의원(6인)

강성중 김종인 박재완 이해봉
 장윤석 정화원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광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영선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김용갑	김원기	김원훈	김재경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김재윤	김정권	김정환	김종률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김종인	김춘진	김현미	김태년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김태홍	김학송	김희선	김형오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김형주	김효석	김희민	김희정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문석호	문학진	문희환	민병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영선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이병석	이상경	이상민	이상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이진구	이해봉	임종인	임채정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이낙연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성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인
황우여	황진하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기권 의원(4인)

강봉균	강성종	심재철	이상득
-----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훈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환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현미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희선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민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응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환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미경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4인)

강성종	김우남	박찬숙	이상민
-----	-----	-----	-----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중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2인)

박세환 박종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화 원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회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강 성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87인)

강 기 정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홍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자 김 애 실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룡 김 종 인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재 완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형 준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감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국 환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엄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제 창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호 중 이 강 두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찬
 임 중 석 임 중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여 옥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중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정 식
 주 성 영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천 정 배 최 규 성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영 선

기권 의원(10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응 래 노 회 찬
 박 세 환 이 영 순 이 해 봉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봉 균 강 성 중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태년 김학송 김희정 나경원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환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찬석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배기선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영순 이용희
 이성권 이시종 이인기 이인영
 이원영 이은영 이종구 이주영
 이인제 이재오 이해봉 이해찬
 이주호 이진구 이채정 임해규
 임종석 임종심 장영달 장윤석
 장경수 장복옥 전재희 정갑윤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성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진섭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조순형
 정청래 정희수 제종길 조병문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천영세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형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이강두 정진석 최용규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7인)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장창일 장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환 민병두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순자 박영선 박재완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인태 유재건 유승민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광재 이광철
 이낙연 이상경 이상득 이용희
 이인영 이주영 이해찬 이해규
 임해정 임채정 장윤석 정갑윤
 정성호 정진섭 조순형 조병문
 지병세 천영세 천영국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중 구
 이 주 영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해 규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현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진 섭 정 청 래
 정 희 수 제 종 길 조 순 형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회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9인)

강 기 갑 권 영 길 노 회 찬 이 상 민
 이 해 봉 주 호 영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33인)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조 홍 고 진 화
 광 성 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홍
 김 근 태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종 룡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학 송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희 선 남 경 필
 노 영 민 노 현 송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민 병 두 박 기 춘
 박 명 광 박 찬 석 박 형 준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상 기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국 환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엽 안 민 석 안 영 근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제 창
 우 제 항 유기 흥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인 태 유 재 건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낙 연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시 종 이 용 회 이 원 복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주 영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해 찬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전 병 현 전 여 옥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회 채 일 병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성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철 국
 한 병 도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창 선

반대 의원(56인)

장 기 갑 고 경 화 권 영 길 김 광 원
 김 기 춘 김 병 호 김 송 차 김 애 실
 김 영 숙 김 용 갑 김 종 인 김 충 환
 나 경 원 노 회 찬 문 희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숙 배 일 도 서 병 수 송 영 선
 신 상 진 심 재 철 유 정 복 윤 건 영
 이 강 두 이 경 재 이 계 경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성 구 이 영 순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중 구 임 해 규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진 섭 정 화 원 정 희 수
 조 순 형 주 호 영 진 영 차 명 진
 천 영 세 최 병 국 최 순 영 한 선 교
 허 천 현 애 자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7인)

강 성 중 고 흥 길 권 경 석 김 낙 성
 김 무 성 김 희 정 배 기 선 안 경 룡
 이 군 현 이 기 우 이 상 득 이 성 권
 이 주 호 전 재 회 정 문 현 제 종 길
 최 연 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1인)

강 기 정 강 성 중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광 성 문 권 경 석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홍 김 근 태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명 자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송 차

김애실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세환
 박순자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장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시종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해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철국 최용규
 최재성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이상민 정희수

기권 의원(13인)

강기갑 권영길 김무성 노회찬

박재완 이낙연 이영순 이종구
 이해봉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현애자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35인)

강성종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무성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송자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충환 김태년
 김학송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현송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순자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손봉숙 신국환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제창
 유제항 유기준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건영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진 이근식 이상득
 이기우 이낙연 이병석 이시종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진구
 이용희 이은영 이주호 임해규
 이해찬 임종석 임채정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전병헌 전여옥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섭
 정화원 제종길 조정식
 지병문 채일병
 정희수 제종길 최일병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채일병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재성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태열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태열
 홍미영 홍창선 황진하

반대 의원(48인)

강기갑 강기정 강창일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김기춘 김성조
 김애실 김영선 김원웅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노회찬	문희회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신기남
박진서	김진원	선병렬	유정복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신상경
이강두	이계안	이목희	이상경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이상민	이상배	이영순	이원복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이원영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이종구	이주영	임종인	장영달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정갑윤	정몽준	정성호	정진석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조순형	진수희	차명진	천영세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최순영	최연희	현애자	홍재형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기권 의원(20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고경화	김우남	김재윤	김정권	윤건영	윤두환	윤호중	이강두
김희정	문병호	송영선	심재철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유기홍	이광재	이광철	이인영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해봉	전재희	정문현	정병국	이균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정청래	진영	허천	황우여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현애자
				황진하			황우여

○출석 의원(273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곽성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이재오	이재웅	이종걸	이종구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김교홍	김근태	김기춘	김낙성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화영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김명자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정중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김정권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조성태	조순형	조정식	주성영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영세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회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황진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석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선병렬				

○출장 의원(10인)

김기현	김명주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안명옥	윤원호	이재창
조일현	주승용		

○청가 의원(6인)

김 학 원 이 방 호 이 영 호 정 덕 구
조 배 숙 한 명 숙

○출석 국무위원

부 총 리 겸 권 오 규
재 정 경 제 부 장 관
부 총 리 겸 김 신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 일 부 장 관 이 재 정
외 교통 상 부 장 관 송 민 순
법 무 부 장 관 김 성 호
국 방 부 장 관 김 장 수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박 명 재
정 보 통 신 부 장 관 노 준 형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유 시 민
환 경 부 장 관 이 치 범
노 동 부 장 관 이 상 수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이 용 섭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장 병 완

○출석 정부위원

재 정 경 제 부 제 1 차 관 박 병 원
과 학 기 술 부 차 관 박 영 일
외 교통 상 부 제 1 차 관 조 중 표
행 정 자 치 부 제 2 차 관 장 인 태
문 화 관 광 부 차 관 박 양 우
농 립 부 차 관 박 해 상
산 업 자 원 부 제 2 차 관 이 원 결
건 설 교 통 부 차 관 이 춘 회
해 양 수 산 부 차 관 이 은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김 태 랑
입 법 차 장 민 동 기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법제사법	이상민	열린우리당	2006. 12. 20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이종걸	법제사법	건설교통	열린 우리당	2006. 12.13
최용규	통일외교통상	환경노동		
장영달	환경노동	통일외교통상		
정성호	건설교통	법제사법		

○의안 제출

大氣環境保全法 전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06. 12. 8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 의
원 대표발의)

(2006. 12. 8 윤두환·김태환·한선교·권철
현·이주호·김충환·허천·이진구·심재
철·김정권·김석준·이인기·안경률·이상
배·김기춘·김재경·박승환·권오을·김영
덕·정갑윤·이성권 의원 발의)

12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6.10 민주항쟁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2006. 12. 8 이인영·강기갑·강기정·강성
종·강창일·강혜숙·권영길·김교홍·김근
태·김낙순·김동철·김부겸·김선미·김성
곤·김영주·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
윤·김재홍·김종률·김진표·김춘진·김태
년·김태홍·김현미·김형주·김희선·노영
민·노응래·노현송·단병호·문병호·문학
진·민병두·박계동·박기춘·박명광·박병
석·박상돈·박영선·박찬석·배기선·배일
도·백원우·서갑원·서혜석·선병렬·송영
길·신기남·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민
석·안영근·양승조·양형일·오영식·오제
세·우상호·우원식·우윤근·우제창·원혜
영·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인
태·유재건·윤원호·윤호중·이강래·이경
숙·이광재·이광철·이기우·이목희·이미
경·이상경·이상민·이석현·이시종·이영
순·이영호·이용희·이은영·이종걸·이해
찬·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복
심·장영달·장향숙·전병헌·정덕구·정동
채·정병국·정봉주·정성호·정장선·정청
래·제종길·조배숙·조성래·조정식·지병
문·채수찬·천영세·천정배·최규성·최규
식·최성·최순영·최용규·최재성·최재
천·최철국·한광원·한병도·현애자·홍미
영·홍재형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차명진·유기준·이해봉·엄호
성·신상진·이성권·김양수·정성호·박상
돈·이재오·이계경·이성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우원식·김종률·노영민·노웅래·우윤근·장영달·장향숙·제종길·조성래·최규성 의원 발의)

土壤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우원식·김종률·노영민·노웅래·우윤근·장영달·장향숙·제종길·조성래·최규성 의원 발의)

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우원식·김종률·노영민·노웅래·우윤근·장영달·장향숙·제종길·조성래·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주호·최구식·이원복·이군현·임해규·주호영·권철현·윤건영·박재완·공성진·김양수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주호·최구식·이원복·이군현·임해규·주호영·권철현·윤건영·박재완·공성진·김양수 의원 발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주호·최구식·이원복·이군현·임해규·주호영·권철현·윤건영·박재완·공성진·김양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주호·최구식·이원복·이군현·임해규·주호영·권철현·윤건영·박재완·공성진·김양수 의원 발의)

12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신상진·고조흥·고진화·김명주·김충환·김희정·박세환·박순자·박찬숙·배일도·서병수·안상수·엄호성·이경재·이성구·이재웅·이주호·주호영·진영·한선교·황진하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인기·김태환·이강두·정갑윤·김광원·고홍길·강길부·곽성문·강기갑·최병국·정문헌·권경석·이성권 의원 발의)

畜産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인기·김태환·정갑윤·김광원·고홍길·강길부·곽성문·강기갑·최병국·정문헌·권경석·이성권·이강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骨材採取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인기·이성권·곽성문·신상진·허천·정희수·김재경·김석준·이진구·박승환·최병국·정문헌·권경석 의원 발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이계안·우제창·이미경·송영길·장향숙·천정배·강창일·임종인·신학용·박명광·김형주·이목희·김우남·한광원·조경태·우상호·원혜영·문희상·정장선·우원식·윤호중·최규성·주승용·염동연·윤원호·서갑원·박영선·김낙순·신국환·김영주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이진구·이해봉·박재완·문학진·서재관·이낙연·정진석·홍재형·한병도·허천·김석준·박승환·윤두환·정희수·이인기·이재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12. 8 박상돈·김재경·허천·김석준·이진구·박승환·유필우·문학진·강길부·조일현·홍재형 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과천지원특별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안상수·김태환·이명규·황우여·이경재·서상기·권철현·전재희·김병

호 · 임해규 · 주성영 · 박진 · 이재웅 · 정갑윤 · 맹형규 · 임인배 · 홍준표 · 박순자 · 진영 · 김양수 · 김정권 · 김광원 · 주호영 · 김용갑 · 최병국 · 이주영 · 이규택 · 권경석 · 김석준 · 배일도 · 임태희 · 고조홍 · 이성구 · 이인기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최용규 · 제종길 · 김영주 · 우원식 · 김종률 · 이강래 · 조성래 · 강봉균 · 이영호 · 박기춘 · 주승용 · 조일현 · 양승조 · 장기정 · 이상민 · 오영식 · 선병렬 · 노웅래 · 최성 · 김현미 · 정성호 · 김선미 · 김춘진 · 오제세 · 박명광 · 박영선 · 정덕구 · 문병호 · 우제창 · 정청래 · 윤호중 · 김성곤 · 신기남 · 조배숙 · 장향숙 · 김태홍 · 장복심 · 김낙순 · 우윤근 · 이은영 · 민병두 · 이기우 · 한병도 · 정장선 · 김교홍 · 이미경 · 조정식 · 김형주 · 문학진 · 장영달 · 윤원호 · 홍창선 · 전병헌 · 서혜석 · 유재건 · 이상경 · 송영길 의원 발의)

12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戶籍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안명옥 · 배일도 · 유정복 · 엄호성 · 정의화 · 이종구 · 김석준 · 안홍준 · 이계경 · 심재엽 · 고흥길 의원 발의)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葬事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안명옥 · 배일도 · 유정복 · 엄호성 · 정의화 · 이종구 · 김석준 · 안홍준 · 이계경 · 심재엽 · 고흥길 의원 발의)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정청래 · 김재윤 · 전병헌 · 윤원호 · 지병문 · 조배숙 · 배기선 · 정동채 · 김영주 · 김혁규 · 신학용 · 김재홍 · 홍미영 · 서혜석 · 문학진 · 유필우 · 이상민 · 장향숙 · 김덕규 · 이강래 · 한병도 · 안민석 · 임종인 · 이광철 · 김희선 · 김태년 · 강혜숙 · 김태홍 · 이광재 · 이종걸 · 윤호중 의원 발의)

12월 1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김교홍 · 안상수 · 박찬석 · 최순영 · 박명광 · 정봉주 · 민병두 · 장복심 · 이경숙 · 황우여 · 한광원 · 이은영 · 지병문 · 유기홍 · 정장선 · 김영춘 · 최재성 · 안민석 · 우제창 의원 발의)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김교홍 · 안상수 · 박찬석 · 최순영 · 박명광 · 정봉주 · 민병두 · 장복심 · 이경숙 · 황우여 · 한광원 · 이은영 · 지병문 · 유기홍 · 정장선 · 김영춘 · 최재성 · 안민석 · 우제창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1 김교홍 · 안상수 · 박찬석 · 최순영 · 박명광 · 정봉주 · 민병두 · 장복심 · 이경숙 · 황우여 · 한광원 · 이은영 · 지병문 · 유기홍 · 정장선 · 김영춘 · 최재성 · 안민석 · 우제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권 · 권철현 · 김명주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인기 의원 발의)

國民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양승조 · 김효석 · 장향숙 · 백원우 · 박상돈 · 안상수 · 심재덕 · 김재윤 · 안민석 · 양형일 · 강기정 · 정성호 · 서혜석 · 김종률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권 · 김명주 · 김석준 · 김양수 · 남경필 · 박형준 · 이군현 · 이계경 · 이인기 · 한선교 의원 발의)

1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권 · 권철현 · 김명주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인기 의원 발의)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軍人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
흥·공성진·곽성문·김기현·문희·심재
철·이명규·박재완·김태환·김송자·정화
원 의원 발의)

12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
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
흥·공성진·송영선·곽성문·김기현·문
희·심재철·박재완·박찬숙·이명규·김태
환·김송자·정화원 의원 발의)

12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
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
흥·공성진·송영선·곽성문·김기현·문
희·심재철·박재완·박찬숙·이명규·김태
환·김송자·정화원 의원 발의)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
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
흥·공성진·송영선·곽성문·김기현·문
희·심재철·박재완·박찬숙·이명규·김태
환·김송자·정화원 의원 발의)

警察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
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
흥·공성진·송영선·곽성문·김기현·문
희·심재철·박재완·박찬숙·이명규·김태
환·김송자·정화원 의원 발의)

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
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
흥·공성진·송영선·곽성문·김기현·문
희·심재철·박재완·박찬숙·이명규·김태
환·김송자·정화원 의원 발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이성구·김학송·이석현·고조
흥·공성진·송영선·곽성문·김기현·문
희·심재철·박재완·박찬숙·이명규·김태
환·김송자·정화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特殊教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

표발의)

(2006. 12. 12 나경원·임태희·김정훈·황우
여·박세환·이해봉·이계경·안상수·이성
권 이인기·서병수·박찬숙·엄호성·진영·
이경재·배일도 의원 발의)

12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김동철·최성·강창일·김중
률·강기정·양형일·염동연·김태홍·정동
채·지병문·서혜석·장향숙·선병렬·우원
식·제종길·최규성·한광원·정장선·원혜
영·임종인·이영호·조배숙·윤원호·김우
남·유승희·조경태·김춘진·이종걸·우윤
근 의원 발의)

12월 13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2 김동철·이은영·정성호·김중
률·강기정·양형일·염동연·김태홍·문희
상·지병문·선병렬·장향숙·우원식·제종
길·한광원·원혜영·정장선·우상호·임종
인·이영호·장경수·조배숙·윤원호·김우
남·유승희·조경태·김춘진·이종걸 의원 발
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김기
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3 김기현·김정권·정갑윤·박세
환·유기준·이인기·이영호·이해봉·정성
호·신상진·황우여·이계진·장복심·서재
관·배일도·안상수·박명광·차명진·엄호
성 의원 발의)

12월 1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3 정부 제출)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
표발의)

(2006. 12. 13 유선호·김성곤·김태홍·이상
열·강창일·이인영·최성·최규식·우윤
근·최인기·박찬석·정성호·양형일 의원 발
의)

12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都市開發法 전부개정법률안

首都圈整備計画法 전부개정법률안**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전부개정법률안****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 2006. 12. 13 정부 제출)

이상 10건 12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3 정부 제출)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금융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3 임태희 · 엄호성 · 서병수 · 신학용 · 이계경 · 나경원 · 김정권 · 김애실 · 김정훈 · 정형근 · 정화원 의원 발의)

12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敎員의勞動組合設立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3 한선교 · 이명규 · 김정훈 · 엄호성 · 김충환 · 이성권 · 정두언 · 유승민 · 김양수 · 김영선 의원 발의)

1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3 노회찬 · 강기갑 · 권영길 · 김종률 · 단병호 · 박명광 · 심상정 · 안영근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3 정청래 · 김교홍 · 김현미 · 유선호 · 서갑원 · 우제향 · 천영세 · 이광철 · 손봉숙 · 김형주 · 윤호중 · 한병도 · 백원우 · 원혜영 · 노현송 · 임종석 · 이미경 · 박영선 · 박명광 · 이영호 · 전병현 · 노영민 · 유승희 · 김태년 · 우윤근 · 한광원 · 김춘진 · 양승조 · 장복심 · 김진표 · 조성태 · 김성곤 · 임종인 · 김재윤 · 이광재 · 강혜숙 · 지병문 · 윤원호 · 문학진 · 박기춘 · 김부겸 · 최재천 · 이화영 · 서혜석 · 배기선 · 김영주 · 안민석 · 유기홍 · 김낙

순 · 홍미영 · 이인영 · 강창일 · 서재관 · 유필우 · 홍재형 · 김희선 · 김종률 · 우원식 · 김동철 · 이종걸 · 김태홍 · 안영근 · 장영달 · 천정배 · 신학용 · 김재홍 · 김영춘 · 배일도 · 이석현 · 홍창선 · 박찬석 · 신기남 · 장향숙 · 이강래 · 조성래 · 정장선 · 문희상 · 박상돈 · 권선택 · 정덕구 · 이상경 · 강기정 · 김낙성 · 오영식 · 유재건 · 이은영 · 송영길 · 노용래 · 이목희 · 최규식 · 최철국 · 이영순 · 조배숙 · 김원웅 · 문병호 · 채수찬 · 이경숙 의원 발의)

12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4 강창일 · 지병문 · 이영호 · 김낙순 · 김재윤 · 정성호 · 이인영 · 김영춘 · 강기정 · 노현송 · 유선호 · 박재완 · 김태년 · 이계경 · 유기홍 · 고조홍 · 신학용 · 이계안 · 김종률 · 김우남 의원 발의)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4 김석준 · 안상수 · 엄호성 · 김태환 · 이해봉 · 이계경 · 김기현 · 정희수 · 심재엽 · 박계동 · 정진석 의원 발의)

12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公職者倫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4 김영주 · 윤원호 · 김동철 · 김교홍 · 서갑원 · 유기홍 · 노영민 · 정봉주 · 임종석 · 송영길 · 최재성 · 신학용 · 윤호중 의원 발의)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안(한화갑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4 한화갑 · 김낙성 · 김송자 · 김영덕 · 김우남 · 김혁규 · 김효석 · 맹형규 · 문희 · 송영선 · 신중식 · 안홍준 · 엄호성 · 염동연 · 윤호중 · 이상열 · 이영호 · 이종걸 · 정두언 · 채일병 · 한광원 의원 발의)

12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동해안광역권개발 지원 특별법안(윤두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4 윤두환 · 이병석 · 정몽준 · 김광원 · 정갑윤 · 최병국 · 강길부 · 김기현 · 최연희 · 정문현 · 정종복 · 심재엽 · 박세환 · 이광재 · 이상득 의원 발의)

12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4 천영세 · 심상정 · 단병호 · 권영길 · 노회찬 · 현애자 · 이영순 · 최순영 · 강기갑 · 손봉숙 · 정청래 · 김재윤 · 이광철 의원 발의)

12월 1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4 김낙성 · 신중식 · 이시종 · 이인제 · 정진석 · 최인기 · 김광원 · 류근찬 · 신국환 · 김우남 · 강기갑 · 한광원 · 한화갑 · 우윤근 · 최규성 · 홍문표 · 김영덕 · 박상돈 의원 발의)

12월 1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韓國國際協力團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남경필 · 신상진 · 박희태 · 김무성 · 정병국 · 김명주 · 정화원 · 이해봉 · 이성권 · 안상수 · 한선교 · 임태희 · 안홍준 · 서병수 · 이인기 · 배일도 · 이성구 · 이계경 · 정의화 의원 발의)

12월 1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남경필 · 이성권 · 권철현 · 심재철 · 김명주 · 정병국 · 정화원 · 고조홍 · 차명진 · 안홍준 · 임해규 의원 발의)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최재천 · 천정배 · 정봉주 · 이경숙 · 임종인 · 김영춘 · 이상민 · 우원식 · 이근식 · 장영달 · 선병렬 · 김태년 · 정성호 의원 발의)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김영선 · 김명주 · 박세환 · 조성래 · 박상돈 · 정성호 · 황우여 · 이계진 · 전여옥 · 김무성 · 정문헌 · 이성구 · 안상수 · 김기현 · 심재철 · 박명광 · 김학원 · 한선교 · 정중복 · 김용갑 의원 발의)

12월 1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이상배 · 김광원 · 이성권 · 정갑윤 · 임인배 · 이인기 · 이계경 · 정희수 · 최병국 · 안택수 · 정화원 · 문희 · 최경환 의원 발의)

12월 1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조경태 · 이영호 · 김명주 · 이해봉 · 정성호 · 김우남 · 김종률 · 우윤근 · 박상돈 · 장경수 의원 발의)

12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조경태 · 김명주 · 이해봉 · 한광원 · 주승용 · 김우남 · 김종률 · 우윤근 · 박상돈 · 장경수 의원 발의)

12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부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 대출 · 관리소홀 등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6. 12. 15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한국은행 지역본부 및 지점 존치 건의안
(2006. 12. 15 최구식 · 김재경 · 서갑원 · 김성조 · 정중복 · 박형준 · 김양수 · 정갑윤 · 이강두 · 김선미 · 권경석 · 김덕룡 · 김태환 · 이병석 · 김학원 의원 발의)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首都圈整備計劃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5 정병국 · 고경화 · 임해규 · 고조홍 · 배일도 · 차명진 · 한광원 · 이경제 · 이규택 · 남경필 의원 발의)

12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5 정부 제출)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自動車交通管理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안상수 · 정갑윤 · 엄호성 · 이인기 · 박찬숙 · 정문헌 · 이성구 · 신상진 · 황우여 · 이성권 · 김학원 의원 발의)

1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8 정부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

한 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윤호중·김원용·장영달·희선·김교홍·주승용·박기춘·정성호·염동연·최성·김형주·양승조·양형일·강기정·김재윤·문희상·신기남·김태홍·이낙연·최연희·김효석·신국환·한화갑·유재건·오영식·김태년·이기우·우제항·이시종·채수찬·배기선·정동채·김영주·김혁규·임종석·김춘진·조정식·노영민·장복심·박상돈·강성종·우상호·정장선·장향숙·김덕규·이상민·임종인·유기홍·김영춘·서혜석·조배숙·지병문·민병두·최재천·조경태·우원식·최규성·이계안·김우남·우윤근·한광원·조일현·문학진·홍재형·한병도·안민석·서갑원·원혜영·이영호·장경수·선병렬·박영선·이종걸·이석현·김종률·서재관·김선미·이목희·최규식·김정권·백원우·이은영·노현송·홍미영·황우여 의원 발의)

12월 2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최인기·채일병·신상진·이상열·신중식·유선호·김성곤·강기갑·신국환·권선택·손봉숙·김낙성 의원 발의)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정화원·남경필·안명옥·이성권·권철현·배일도·임태희·김명주·박형준·정종복·이인기·고조홍·정병국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정화원·신상진·박계동·김무성·이계경·김정권·홍준표·이성구·박종근·김희정·안명옥·차명진·이강두·서상기·정갑윤·정희수·박찬숙·황진하·남경필·이명규·김충환·이성권·권철현·배일도·임태희·안홍준·박형준·이상배·전재희·정종복·고경화·황우여·유정복·이주영·서병수·고조홍·정병국·이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노회찬·강기갑·권영길·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 의원 발의)

1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배일도·장윤석·김양수·정병국·김정권·이계경·김성조·김희정·황진하·심재철·주성영·윤두환·임태희·공성진·최구식·안명옥·윤건영·박순자·정청래·정화원·신상진·차명진·이경재·김애실·정희수·김영덕·유기준·장향숙·정진섭·한병도·김영주·장복심·임종석·한광원·윤원호·이미경·우상호 의원 발의)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8 정부 제출)

12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8 장향숙·제종길·강기정·정성호·김선미·정장선·정봉주·이근식·이미경·박명광·우윤근·이은영·이계안·이경숙·김종률·이목희·조성래·김덕규·유선호·문병호·양승조·우제항·백원우·박상돈·장영달·김영춘·조경태·원혜영·배기선·서갑원·장복심·김현미·김우남·이기우·강길부·김명자·우제창·장경수·이석현·김춘진·노영민·우원식·노웅래·한광원·김태년·김태홍·박기춘·이광철·서재관·지병문·윤호중·윤원호·조성태·강봉균 의원 발의)

1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關稅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9 정부 제출)

12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9 정부 제출)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9 김애실·이인기·박재완·고조홍·황우여·심재철·허태열·차명진·임태희·이종구 의원 발의)

12월 2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9 김애실 · 이해봉 · 이인기 · 박재완 · 엄호성 · 김정훈 · 정갑윤 · 신상진 · 임태희 · 이성구 의원 발의)

非常對備資源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9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血液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9 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김태년 · 고조홍 · 노회찬 · 단병호 · 배일도 · 심상정 · 이영순 · 엄호성 · 정성호 · 정의화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9 정부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2006. 12. 19 김희선 · 강기갑 · 강기정 · 강길부 · 강혜숙 · 고진화 · 권영길 · 김덕규 · 김선미 · 김영주 · 김영춘 · 김우남 · 김종률 · 김진표 · 김태년 · 김태홍 · 김현미 · 김형주 · 노영민 · 노웅래 · 노현송 · 단병호 · 문병호 · 문석호 · 민병두 · 박기춘 · 박병석 · 박상돈 · 박영선 · 백원우 · 선병렬 · 송영길 · 신학용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식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유승희 · 윤원호 · 윤호중 · 이경숙 · 이광철 · 이근식 · 이목희 · 이미경 · 이상경 · 이영순 · 이용희 · 이원영 · 이은영 · 이종걸 · 이화영 · 장경수 · 장영달 · 전병헌 · 정동채 · 정성호 · 제종길 · 조배숙 · 조일현 · 조정식 · 주승용 · 최순영 · 최재성 · 한병도 · 홍미영의원 발의)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19 정부 제출)

12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06. 12. 19 정부 제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ITER 국제 핵융합에너지 기구의 특권 및 면

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06. 12. 19 정부 제출)

12월 2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대외원조기본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9 김부겸 · 최성 · 이해봉 · 박상돈 · 김종률 · 이인영 · 강성중 · 문희상 · 박찬숙 · 정성호 · 김영춘 · 원혜영 · 장영달 · 민병두 · 조정식 · 김우남 · 정장선 · 염동연 · 정희수 · 장향숙 · 박찬석 의원 발의)

12월 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9 주승용 · 강길부 · 김성곤 · 김우남 · 박상돈 · 서재관 · 신중식 · 신학용 · 이인기 · 이종걸 · 장복심 · 정성호 · 채일병 · 최성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6. 12. 19 주승용 · 강길부 · 고조홍 · 김성곤 · 김우남 · 박상돈 · 박찬숙 · 서재관 · 신중식 · 신학용 · 이인기 · 이종걸 · 이해봉 · 장복심 · 정성호 · 채일병 · 최성 · 황우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상임감사 판공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청구안

(2006. 12. 20 이계진 · 정종복 · 박형준 · 장운석 · 이재용 · 박찬숙 · 최구식 · 정병국 · 손봉숙 · 천영세 · 김충환 · 유정복 · 한선교 · 이경재 · 이강두 · 김학원 · 정문헌 · 윤건영 · 임해규 · 이계경 · 박재완 · 송영선 · 김영숙 · 이주호 · 심재엽 · 김애실 · 정화원 · 김명주 · 신상진 · 황진하 · 박세환 · 심재철 · 고경화 · 이해봉 · 정희수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이목희 · 김희선 · 김영주 · 이인영 · 이계안 · 장복심 · 김형주 · 조정식 · 이미경 · 박명광 · 원혜영 · 양형일 · 이기우 · 우원식 의원 발의)

12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이영순 · 최순영 · 천영세 · 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고경화·임태희·정갑윤·신상진·이계경·정희수·정병국·이인기·엄호성·김기현·배일도·박찬숙·정의화·장복심 의원 발의)

1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고경화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고경화·임태희·정갑윤·신상진·이계경·정희수·정병국·이인기·엄호성·김기현·배일도·박찬숙·정의화·장복심 의원 발의)

12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이명규·곽성문·김명주·김태년·박재완·박찬숙·서병수·신상진·엄호성·이성권·이인기·이해봉·정갑윤·한선교·황우여 의원 발의)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6. 12. 20 정부 제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유승희·한광원·홍창선·강기정·김덕규·김성곤·김우남·김춘진·김태년·김태홍·노영민·백원우·변재일·서갑원·서재관·양승조·염동연·오영식·우윤근·우제항·유재건·유선호·윤호중·이미경·이용희·이은영·임종인·장영달·정청래·조성태·최규성 의원 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한병도·우원식·노영민·김형주·장향숙·홍미영·박상돈·서갑원·노현송·김태년·정성호·최규성 의원 발의)

12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손봉숙·김재윤·박상돈·박찬숙·유재건·이계진·이광철·이재웅·이주

호·천영세·최인기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손봉숙·박상돈·박형준·유재건·이계진·이근식·이상열·이재웅·이주호·장윤석·정종복·천영세·최인기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0 손봉숙·박상돈·박형준·유재건·이계진·이근식·이상열·이재웅·이주호·장윤석·정종복·천영세·최인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1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김우남·김부겸·김재윤·강창일·김광원·이강두·류근찬·서혜석·김낙성·신중식·한광원·조경태·우윤근·한화갑·이인영·김영춘·염동연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신중식·김우남·한광원·김낙성·최성·서재관·홍문표·노영민·박찬숙·이시종·우윤근·주승용·채일병·김효석·최인기·조일현·김영덕·이강래·이낙연·한화갑·김명주·김송자·김태년·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사비(泗比)역사도시 복원·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김학원·유기준·이경재·김기현·김학송·서상기·박순자·안택수·김기춘·김병호·김충환·이군현·김명주·이계진·허태열·엄호성·주성영·김석준·서병수·맹형규·박계동·황우여·김정훈·배일도·주호영·김정권·김성조·이강두·정종복·김영선·김덕룡·정화원·최병국·박종근·정갑윤·홍문표·이윤성·김광원·최경환·박세환·박형준 의원 발의)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6. 12. 21 정무위원장 제출)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르느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06. 12. 21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21 산업자원위원장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21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大韓赤十字社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6. 12. 21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조성래·최성·강창일·김춘진·우제항·강길부·양형일·강혜숙·장향숙·윤원호·김태년 의원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조성래·최성·강창일·김춘진·우제항·강길부·양형일·강혜숙·장향숙·윤원호·김태년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조성래·최성·강창일·김춘진·우제항·강길부·단병호·양형일·강혜숙·장향숙·윤원호·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3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6. 12. 21 안민석·민병두·이은영·유기홍·김재윤·백원우·이경숙·이미경·정봉주·김영춘·이인영·천정배·김교홍·김춘진·이상경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21 교육위원장 제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21 국방위원장 제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06. 12. 21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21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 12. 21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北韓離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06. 12. 21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민국국기법안(대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06. 12. 21 행정자치위원장 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06. 12. 21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06. 12. 21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21 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00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건)

(2006. 12. 22 각 소관 상임위원장 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 2006. 12. 22 건설교통위원장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2006. 12. 22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12건 2006. 12. 22 재정경제위원장 제출)

제26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6. 12. 22 의장 제의)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12일간)

○의안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6. 11. 8 노웅래 · 정청래 · 김재윤 · 김명자 · 강길부 · 김재홍 · 이광철 · 전병헌 · 강혜숙 · 한광원 · 박찬석 · 우상호 · 장경수 · 최철국 · 김희선 · 강성중 · 박기춘 · 김교홍 · 박찬숙 · 윤원호 · 지병문 · 오제세 · 김혁규 · 정동채 · 정성호 · 최성 · 최용규 · 이광재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6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2006. 3. 23 임종인 · 권영길 · 김태년 · 단병호 · 박찬석 · 심상정 · 엄호성 · 이영순 · 강창일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발의)

(2006. 9. 13 김한길 의원 외 14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21 문병호 · 강창일 · 강혜숙 · 김태년 · 김재윤 · 단병호 · 서갑원 · 안병엽 · 안영근 · 양승조 · 우제창 · 이상경 · 이석현 · 장항

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06. 9. 14 김기현 · 이혜훈 · 정희수 · 정중복 · 심재엽 · 권경석 · 최구식 · 안홍준 · 윤건영 · 임해규 · 김석준 · 김영덕 · 이계경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6. 6. 8 정부 제출)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2 최순영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4. 10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2006. 3. 16 이성구 · 김재원 · 안상수 · 엄호성 · 박찬숙 · 심재철 · 이해봉 · 이재창 · 김정훈 · 박상돈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3. 29 정부 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6. 5. 30 주호영 · 정문헌 · 이해봉 · 이인기 · 권오을 · 엄호성 · 임태희 · 김태환 · 임인배 · 광성문 · 김석준 · 강제섭 · 윤건영 · 권영세 · 정두언 · 김성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이계경 · 엄호성 · 신학용 · 김영선 · 심재철 · 박명광 · 진수희 · 이상배 · 김석준 · 이성권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대표발의)

(2006. 8. 8 박명광 · 우제창 · 이광철 · 김종률 · 김태년 · 정문헌 · 이영호 · 이근식 · 엄호성 · 조경태 · 이해봉 · 이시종 · 안상수 · 김태년 · 안병엽 · 김동철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06. 5. 26 정부 제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6. 21 오제세 · 김영선 · 노현송 · 이해봉 · 심재덕 · 안상수 · 신학용 · 박명광 · 박상돈 · 장영달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정무위원장 보고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6. 9. 29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16 정부 제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4. 28 이계경 · 이인기 · 김석준 · 장윤석 · 박순자 · 박재완 · 김무성 · 이해봉 · 엄호성 · 이성권 · 김정훈 · 김기현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21 정부 제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오제세 · 박명광 · 이영호 · 신국환 · 황우여 · 박상돈 · 정갑윤 · 이해봉 · 정성호 · 신상진 · 김애실 의원 발의)

信用保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06. 9. 20 김태년 · 배기선 · 박상돈 · 김종률 · 김재홍 · 이성권 · 정성호 · 이광철 · 이광재 · 장복심 · 우제창 · 이영호 · 안병엽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05. 6. 1 박영선 · 민병두 · 정청래 · 심상정 · 권영길 · 조승수 · 송영길 · 장복심 · 오제세 · 김종률 · 강길부 · 장경수 · 최성 · 노회찬 · 조정태 · 서혜석 · 이목희 · 이계안 · 우제창 · 구논회 · 김현미 · 제종길 · 김낙순 · 강봉균 · 정덕구 · 전병헌 의원 발의)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5. 7. 15 정부 제출)
(2005. 10. 13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

찬 · 단병호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김종인 · 이상민 · 임종인 의원 발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06. 9. 27 이원영 · 김희선 · 김종률 · 정성호 · 김재홍 · 박상돈 · 이인기 · 유선호 · 김현미 · 이인영 · 정장선 · 선병렬 · 문석호 · 우제창 · 송영길 · 김영춘 · 임종인 의원 발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21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문병호 · 장향숙 · 정화원 · 박재완 · 김태홍 · 한광원 · 안영근 · 서갑원 · 심재덕 · 우제창 · 이경숙 · 김재홍 · 이종걸 · 노현송 · 강창일 · 이상민 · 김동철 · 신상진 · 김영춘 · 정청래 · 안병엽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06. 9. 29 정부 제출)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이영순 · 최순영 · 천영세 · 현애자 · 이광철 · 임종인 의원 발의)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5. 7. 21 주승용 · 구논회 · 이근식 · 고진화 · 김태홍 · 김종률 · 서혜석 · 안상수 · 엄호성 · 서재관 · 이시중 · 신중식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6. 9. 13 우제창 · 박상돈 · 윤호중 · 김재윤 · 김낙순 · 김현미 · 안병엽 · 김춘진 · 제종길 · 서갑원 · 심재덕 · 문병호 · 서병수 · 정의화 · 엄호성 · 최경환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6. 9. 25 우제창 · 박상돈 · 윤호중 · 김재윤 · 김낙순 · 김현미 · 안병엽 · 김춘진 · 제종길 · 서갑원 · 심재덕 · 문병호 · 서병수 · 정의화 · 최경환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9 정부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2006. 2. 2 김동철 · 양형일 · 엄호성 · 김태홍 · 우제창 · 이강래 · 박명광 · 이원영 · 박기춘 · 박상돈 · 김춘진 · 장복심 · 최인기 · 송영길 · 신학용 의원 발의)

附加價値稅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

(2006. 1. 18 박종근 · 김재원 · 안택수 · 이해봉 · 엄호성 · 윤건영 · 이인기 · 김애실 · 정종복 · 한선교 · 최병국 · 김정부 · 최구식 · 이상배 · 서상기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9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

(2005. 12. 30 이재웅 · 박찬숙 · 권경석 · 이재오 · 최구식 · 박형준 · 김충환 · 정병국 · 정종복 · 정진석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9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4. 3 엄호성 · 김기춘 · 이규택 · 이방호 · 진수희 · 이계진 · 안경률 · 김성조 · 김문수 · 임태희 · 정의화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9 정부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006. 2. 7 윤건영 · 고경화 · 공성진 · 나경원 · 박재완 · 박찬숙 · 배일도 · 서병수 · 심재철 · 엄호성 · 이명규 · 이주호 · 이해봉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 우제창 · 오제세 · 송영길 · 신국환 · 이해훈 · 이계안 · 이미경 · 문석호 · 정의화 · 정덕구 · 문학진 의원 발의)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박병석 · 고흥길 · 조성태 · 김재윤 · 김우남 · 이은영 · 김성곤 · 김부겸 · 오제세 · 김동철 · 윤원호 · 유재건 · 김종률 · 배일도 · 이근식 · 박상돈 · 엄호성 의원 발의)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06. 9. 26 유승민 · 김무성 ·곽성문 · 신상

진 · 주성영 · 박종근 · 정의화 · 황우여 · 김학원 · 서상기 · 엄호성 · 이해훈 의원 발의)

信用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오제세 · 박명광 · 이영호 · 신국환 · 황우여 · 박상돈 · 정갑윤 · 이해봉 · 정성호 · 신상진 · 김애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2006. 8. 3 이계안 · 이목희 · 문석호 · 이미경 · 송영길 · 채수찬 · 우제창 · 전병헌 · 원혜영 · 천정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

(2006. 8. 7 김애실 · 박명광 · 엄호성 · 이계경 · 박세환 · 안상수 · 문희 · 박찬숙 · 배일도 · 박상돈 · 김영선 · 이해봉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6. 8. 9 정성호 · 김태년 · 이진구 · 박상돈 · 안상수 · 우원식 · 김선미 · 김영주 · 이미경 · 이경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8. 11 오제세 · 류근찬 · 박기춘 · 유승민 · 박상돈 · 안상수 · 강창일 · 엄호성 · 이해봉 · 이원영 · 김종률 · 심재덕 · 정성호 · 노현송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희 의원 대표발의)

(2006. 8. 21 임태희 · 이계경 · 이낙연 · 김명주 · 김정훈 · 안병엽 · 유기준 · 박찬숙 · 이해봉 · 김태년 · 엄호성 · 신상진 · 권선택 · 안상수 · 전재희 · 박재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6. 8. 24 신상진 · 신학용 · 유기준 · 박형준 · 정갑윤 · 엄호성 · 안상수 · 이인기 · 이경재 · 정병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9. 12 최인기 · 김효석 · 신중식 · 김홍일 · 이낙연 · 한화갑 · 이상열 · 이승희 · 안택수 · 조순형 · 황우여 · 손봉숙 · 신상진 · 박상돈 · 김학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 표발의)

(2006. 9. 13 송영길 · 신상진 · 박계동 · 신중 식 · 박상돈 · 정청래 · 이인기 · 임종석 · 황우 여 · 김영춘 · 정동채 · 정성호 · 김종률 · 엄호 성 · 안영근 · 안민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 표발의)

(2006. 9. 19 이상민 · 권선택 · 김선미 · 김재 윤 · 김원웅 · 노영민 · 문병호 · 민병두 · 박병 석 · 우제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 표발의)

(2006. 10. 10 서갑원 · 한병도 · 최철국 · 우제 향 · 이계안 · 조정식 · 정성호 · 김덕규 · 이목 회 · 윤호중 · 문석호 · 임종석 · 양승조 · 장경 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 표발의)

(2006. 10. 11 유정복 · 김무성 · 유기준 · 유승 민 · 이해봉 · 김종률 · 박상돈 · 박재완 · 허태 열 · 이인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9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창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13 이재창 · 김병호 · 김학원 · 박상 돈 · 안경률 · 유정복 · 이상배 · 이인기 · 이해 봉 · 황진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석호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14 문석호 · 신학용 · 박명광 · 정성 호 · 한병도 · 이계안 · 우제창 · 양승조 · 채수 찬 · 최규성 · 김진표 · 정진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16 채수찬 · 문석호 · 우제창 · 김명 자 · 박명광 · 신상진 · 안상수 · 김춘진 · 장영 달 · 최규성 · 문학진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法律案(박순자 의원 대 표발의)

(2005. 2. 7 박순자 · 고경화 · 이주호 · 나경 원 · 김문수 · 안명옥 · 전여옥 · 박재완 · 김충 환 · 권영세 · 김정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부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6 김정부 · 고흥길 · 권경석 · 김광 원 · 김성조 · 김양수 · 김우남 · 문석호 · 박승 환 · 심재엽 · 안경률 · 안홍준 · 이계경 · 이방 호 · 이재창 · 이정일 · 정두언 · 정장선 · 최구 식 · 최병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 표발의)

(2005. 11. 18 이혜훈 · 김정훈 · 유승민 · 서병 수 · 유기준 · 김정권 · 박세환 · 최구식 · 한선 교 · 박승환 · 안명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 표발의)

(2006. 1. 25 정진석 · 이인제 · 김재윤 · 신국환 · 김낙성 · 노영민 · 이성권 · 박상돈 · 류근찬 · 이재용 · 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 표발의)

(2006. 3. 30 이시중 · 변재일 · 노영민 · 조일 현 · 김우남 · 신중식 · 이영호 · 홍문표 · 김영 덕 · 장복심 · 이방호 · 김광원 · 강혜숙 · 홍재 형 · 안병엽 · 김혁규 · 박찬석 · 김종률 · 서재 관 · 이상열 · 박승환 · 신학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17 정진석 · 권선택 · 김낙성 · 김재 윤 · 김진표 · 류근찬 · 문석호 · 박명광 · 박상 돈 · 선병렬 · 신국환 · 신중식 · 양승조 · 엄호 성 · 유필우 · 이낙연 · 장영달 · 정덕구 · 정장 선 · 정희수 · 주승용 · 최인기 · 한화갑 의원 발 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29 송영길 · 박상돈 · 신학용 · 이해 봉 · 이영호 · 서재관 · 이인기 · 강봉균 · 우제 창 · 우상호 · 이계안 · 김영춘 · 이종걸 · 이목 회 의원 발의)

(이상 4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 한 대안 제출)

이상 54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동의안

(2006. 12. 4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

正法律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2004. 9. 24 김문수 · 고흥길 · 권영세 · 김석준 · 김영숙 · 김재원 · 나경원 · 박계동 · 박성범 · 박세환 · 박승환 · 배일도 · 안상수 · 엄호성 · 유승민 · 윤건영 · 이경제 · 이계경 · 이균현 · 이성권 · 이윤성 · 이재오 · 전여옥 · 전재희 · 정문헌 · 정의화 · 주성영 · 진수희 · 최병국 · 홍준표 의원 발의)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

(2004. 11. 3 김학원 · 류근찬 · 박재완 · 이원영 · 정병국 · 이윤성 · 김석준 · 노웅래 · 김충환 · 김낙성 · 이재오 · 서재관 · 염동연 · 이근식 · 안상수 · 김기현 · 신중식 · 엄호성 · 김덕규 · 정의화 · 오시덕 · 강재섭 · 이해봉 · 박성범 · 신국환 · 이인기 · 김광원 · 오제세 의원 발의)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경제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2 이경제 · 유승민 · 김재윤 · 배일도 · 이해봉 · 정병국 · 김영주 · 이윤성 · 이상득 · 진수희 · 서병수 · 신국환 · 박세환 · 안상수 · 장복심 · 신중식 · 황우여 · 염동연 · 허천 · 공성진 · 김재원 · 김양수 · 정두언 · 전재희 · 이인제 · 이인기 · 박순자 · 정몽준 의원 발의)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발의)

(2004. 12. 6 황우여 의원 외 120인 발의)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2005. 7. 15 박승환 · 정의화 · 이재웅 · 박재완 · 유기준 · 김문수 · 황우여 · 이성권 · 김재경 · 심재철 · 유승민 · 유정복 · 나경원 · 안상수 · 이해봉 · 장운석 · 엄호성 · 김애실 · 박종근 · 정희수 · 정병국 · 최경환 · 이혜훈 의원 발의)

北韓離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화영 의원 대표발의)

(2005. 9. 14 이화영 · 조정식 · 안민석 · 염동연 · 김명자 · 박명광 · 이인영 · 최규성 · 구논회 · 문학진 · 백원우 · 선병렬 · 민병두 · 박찬석 · 김교홍 · 이경숙 · 이은영 · 정청래 · 김태홍 · 장영달 · 제종길 · 유선호 · 이근식 · 최성 · 김종률 · 이목희 · 김태년 · 김원웅 · 엄호

성 · 신기남 · 이광재 · 윤호중 · 김형주 · 한병도 · 김성곤 · 조성래 · 조배숙 의원 발의)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5 이성권 · 김석준 · 박형준 · 김명주 · 권철현 · 정화원 · 김희정 · 김양수 · 이계경 · 남경필 · 김무성 의원 발의)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

(2006. 2. 1 박성범 의원 외 16인 발의)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5. 6. 2 주승용 · 노웅래 · 문학진 · 우원근 · 정성호 · 심재덕 · 구논회 · 정청래 · 김재윤 · 배기선 · 최규성 · 조일현 · 지병문 · 권선택 · 유승희 · 홍창선 · 장향숙 · 이용희 · 박찬석 · 제종길 · 김명자 · 김동철 · 최성 · 양형일 · 이윤성 · 김성곤 · 윤호중 · 노영민 · 정장선 · 이강래 · 이호웅 · 신중식 · 최순영 · 조정태 · 이낙연 · 김기석 · 박상돈 · 장복심 · 장경수 · 조배숙 · 김덕규 · 김선미 · 윤원호 · 염동연 · 김재홍 · 신기남 · 문석호 · 한병도 · 김홍일 의원 발의)

旅券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3 정부 제출)

(이상 1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06. 12. 7 송영선 의원 외 41인 발의)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3건 2006. 12. 1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안

(2006. 10. 9 정부 제출)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7. 14 정부 제출)

軍人報酬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4. 25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국군부대(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철군 촉구 결의안

(2006. 11. 21 임종인 · 강기갑 · 강성종 · 강창

일 · 강혜숙 · 고진화 · 권영길 · 권오을 · 김원
웅 · 김재윤 · 김재홍 · 김태홍 · 노회찬 · 단병
호 · 문학진 · 박찬석 · 배일도 · 손봉숙 · 심상
정 · 안민석 · 유승희 · 이광철 · 이낙연 · 이미
경 · 이상민 · 이영순 · 이원영 · 이인영 · 강기
정 · 장경수 · 정청래 · 지병문 · 진수희 · 천영
세 · 최순영 · 최재천 · 현애자 · 홍미영 · 유기
홍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홍창선 의원 대표발의)

(2005. 3. 3 홍창선 · 변재일 · 이상민 · 박재
완 · 이인기 · 노현송 · 김낙순 · 우제창 · 안상
수 · 김종률 · 오제세 · 염동연 · 김태홍 · 이해
훈 · 황우여 · 서혜석 · 권선택 · 유승희 · 김원
웅 · 전병헌 · 이종걸 · 정덕구 · 채수찬 · 박계
동 · 안병엽 · 조정식 · 김선미 · 서상기 · 김춘
진 · 이기우 · 유필우 · 이근현 · 진수희 · 유재
건 · 박찬석 · 강기정 · 박명광 · 김형오 · 이근
식 · 최규성 의원 발의)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6. 5. 2 정화원 · 남경필 · 정희수 · 김재
원 · 안상수 · 이계경 · 박찬숙 · 정성호 · 김동
철 · 엄호성 · 심재철 · 이해봉 · 조성래 · 고경
화 · 강기정 · 이성구 · 이해훈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태 의원 대표발의)

(2006. 3. 16 조성태 · 엄호성 · 이상민 · 유기
준 · 김명자 · 안상수 · 김동철 · 김태년 · 안경
률 · 서병수 · 이해봉 · 김홍일 · 최재성 · 유재
건 · 김성곤 · 서재관 · 강혜숙 · 박상돈 · 신중
식 · 이해훈 · 황우여 · 심재덕 · 신국환 · 고조
홍 · 이원영 · 조성래 · 노현송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방위원장 보고

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2006. 2. 7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
표발의)

(2006. 3. 17 박기춘 · 강창일 · 우제창 · 이종
걸 · 이인기 · 노현송 · 조성래 · 김선미 · 우제
항 · 김낙순 · 김태년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
표발의)

(2006. 2. 10 이계경 · 김무성 · 임인배 · 김석

준 · 권경석 · 박세환 · 이인영 · 박찬숙 · 이해
봉 · 이성권 · 고경화 · 안명옥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27 정부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04. 7. 3 이재오 · 류근찬 · 정몽준 · 신국
환 · 김영춘 · 서재관 · 진재희 · 김덕규 · 신병
렬 · 김문수 · 신중식 · 김태환 · 노웅래 · 정화
원 · 정병국 · 이철우 · 황우여 · 이인기 · 김석
준 · 염동연 · 김원웅 · 이영호 · 안상수 · 정문
현 · 유정복 · 박재완 · 이광철 · 오제세 · 김교
홍 · 박창달 · 김근태 · 이해봉 · 박계동 의원 발
의)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04. 7. 12 권경석 · 황진하 · 김재원 · 최구
식 · 정문현 · 최병국 · 김용갑 · 권오을 · 엄호
성 · 김정훈 · 김영덕 · 임인배 · 고흥길 · 이성
권 · 이강두 · 이근식 · 김양수 · 이상배 · 박재
완 · 진수희 · 정종복 · 안경률 · 서병수 · 김기
현 · 김석준 의원 발의)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4. 9. 20 이호웅 · 강기정 · 권선택 · 김교
홍 · 김기석 · 김덕규 · 김동철 · 김명곤 · 김명
자 · 김영주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윤 · 김재
홍 · 김태년 · 김태홍 · 김한길 · 김희선 · 노영
민 · 노웅래 · 노현송 · 문병호 · 문석호 · 문학
진 · 문희상 · 민병두 · 박상돈 · 박찬석 · 박홍
수 · 배기선 · 백원우 · 복기왕 · 서갑원 · 신병
렬 · 송영길 · 신계륜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
용 · 안민석 · 안영근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
식 · 이상호 · 우윤근 · 원혜영 · 유기홍 · 유선
호 · 유시민 · 윤원호 · 윤호중 · 이강래 · 이광
철 · 정봉주 · 이미경 · 이상경 · 이상락 · 이시
종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영 · 이철우 · 이화
영 · 임종석 · 임종인 · 장경수 · 장영달 · 장향
숙 · 정성호 · 정장선 · 정청래 · 조경태 · 조성
래 · 주승용 · 최규성 · 최규식 · 최재성 · 한광
원 · 한명숙 · 한병도 · 홍미영 · 고진화 · 배일
도 · 이재오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
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
영 · 현애자 · 김효석 · 손봉숙 · 이낙연 · 이상

열 · 이승희 · 이정일 · 한화갑 · 강창일 · 구논회 · 김성곤 · 김영춘 · 이경숙 · 김홍일 의원 발의)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1 정성호 · 임채정 · 유재건 · 김맹곤 · 복기왕 · 신기남 · 정장선 · 최규성 · 박계동 · 강창일 의원 발의)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5. 12. 26 정부 제출)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

(2006. 1. 31 노현송 · 엄호성 · 신학용 · 서재관 · 조성래 · 박상돈 · 우제창 · 강창일 · 김우남 · 최재성 · 박찬숙 · 이윤성 · 이은영 · 장복심 · 문학진 · 전여옥 · 박기춘 · 원혜영 · 양형일 · 이원영 의원 발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5. 6. 30 이성권 · 김석준 · 이계경 · 김희정 · 김기현 · 박승환 · 김명주 · 김양수 · 권철현 · 남경필 · 박형준 · 곽성문 · 김재경 · 이재웅 · 정희수 · 박재완 · 이해봉 · 엄호성 · 정병국 · 김충환 · 서혜석 · 정문현 · 안상수 · 김재원 · 정화원 의원 발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1. 3 정부 제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7 주승용 · 강기정 · 김태홍 · 노현송 · 박상돈 · 박성범 · 박찬숙 · 신국환 · 신중식 · 심재덕 · 이해봉 · 장경수 의원 발의)

대한민국국기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4. 6. 10 이상배 · 권오을 · 김광원 · 김석준 · 김성조 · 김태환 · 박종근 · 이상득 · 이인기 · 이해봉 · 임인배 · 주성영 · 주호영 의원 발의)

대한민국국기법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4. 9. 24 홍미영 · 김원웅 · 김태년 · 김현미 · 노현송 · 박기춘 · 서재관 · 신중식 · 심재덕 · 안상수 · 염동연 · 유승희 · 유시민 · 이경숙 · 이계안 · 이원영 · 이재오 · 장복심 · 전병현 · 정문현 · 정성호 · 제종길 · 조성래 · 최규식 · 황우여 의원 발의)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9 강창일 · 김태홍 · 김재윤 · 안민석 · 심재덕 · 임종인 · 박기춘 · 양형일 · 한명숙 · 오영식 · 문학진 · 이상호 · 강혜숙 · 이화영 · 임종석 · 신계륜 · 김원웅 · 이근식 · 오제세 · 김현미 · 노영민 · 이인영 · 정청래 · 최재성 · 김춘진 · 이기우 · 박영선 · 김낙순 · 강성종 · 장향숙 · 박찬석 · 김선미 · 김혁규 · 민병두 · 김성곤 · 조경태 · 주승용 · 박상돈 · 신학용 · 정봉주 · 배일도 · 엄호성 · 김태년 · 이광철 · 지병문 · 원희룡 · 장영달 · 정성호 · 이목희 · 이은영 · 이종걸 · 김우남 · 이시중 · 최규식 · 홍미영 · 조성래 · 유승희 · 문병호 · 원혜영 · 유기홍 · 선병렬 의원 발의)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8. 18 박찬숙 · 김재원 · 심재철 · 이인기 · 윤건영 · 노현송 · 정성호 · 박상돈 · 김석준 · 안명옥 · 박재완 · 엄호성 · 황우여 · 심재덕 의원 발의)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

(2005. 11. 30 현애자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천영세 · 최순영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教育環境改善特別會計法 폐지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4 이성권 · 권철현 · 김석준 · 김양수 · 김희정 · 남경필 · 박형준 · 이계경 · 이근현 · 한선교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6. 3. 20 최재성 · 안민석 · 엄호성 · 강기정 · 노현송 · 이원영 · 이계경 · 신중식 · 이상민 · 이해봉 · 김성곤 · 김태년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5. 12.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

(2005. 12. 1 진수희 · 안상수 · 이인기 · 이근현 · 나경원 · 권영세 · 임태희 · 이재웅 · 최순

영·김영숙·김희정·안명옥·이진구·이성권·정병국·유정복·박승환·박형준·최구식·박찬숙·김석준·임해규·고홍길·한선교·김충환·서상기·김기현·심재엽·이혜훈·권철현·주호영·박세환·유승민 의원 발의)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봉주 의원 대표발의)

(2006. 4. 25 정봉주·조배숙·이인영·구논회·장영달·이목희·지병문·유기홍·민병두·강기정·백원우 의원 발의)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6. 9. 12 이주호·이인기·신상진·김정권·공성진·박재완·정병국·임해규·김애실·윤건영 의원 발의)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6 정부 제출)

(이상 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교육위원장 보고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엽 의원 대표발의)

(2006. 9. 5 심재엽·이해봉·진영·권선택·서상기·이시중·허천·홍창선·김희정·박세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技術士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7. 24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06. 9. 14 유승희·유선호·이경숙·정봉주·유기홍·강창일·이인영·홍미영·임종인·이상민·이영호·강혜숙·김영춘·백원우·홍창선·이석현·이시중·우제항·안병엽·김춘진·변재일·조경태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9 정부 제출)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6. 8. 31 이상배·안상수·안택수·임인배·김광원·황우여·정형근·곽성문·엄호성·김태환·정문헌·이인기·이계경·안병엽·최경환·신상진·김성조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7. 3 정부 제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06. 1. 16 강창일·김태년·김재윤·이광철·정장선·김동철·이목희·박기춘·최규식·양형일·정청래·김원웅·신중식·최성·강기정·최규성·김춘진·조배숙 의원 발의)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고홍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7 고홍길·노용래·강성종·강혜숙·권선택·권오을·김광원·김무성·김선미·김정권·김태년·노영민·단병호·문학진·민병두·박진·배기선·변재일·서재관·심재덕·안상수·엄호성·우제항·원혜영·유기준·윤호중·이강두·이경재·이계진·이규택·이낙연·이원영·이윤성·임태희·정성호·정장선·정종복·정진석·정청래·정형근·제종길·최구식·홍재형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5. 6. 28 이경숙·우원식·김형주·선병렬·강기정·김태홍·이광철·김태년·윤원호·강혜숙·김동철·한명숙·최규성·한병도·유승희·민병두·이재오·정두언·안민석·홍미영·안상수·권오을·지병문·우상호·이호웅·이미경·김재윤·주승용·장향숙·김재홍·양승조·백원우·정청래·강창일·이인영·김교홍·박기춘·노용래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文化財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

(2006. 3. 22 윤원호·이용희·이영호·정종복·김선미·김태년·장복심·이은영·조성래·한병도·이계진·안민석·강길부·강창일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6. 2. 10 최재성·우제항·안경률·엄호성·이해봉·고진화·정병국·박기춘·정봉

주 · 황우여 · 최성 · 이종걸 · 김현미 · 임종석 · 이근식 · 이시종 · 백원우 · 김재윤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6. 6. 19 김충환 · 황진하 · 김재원 · 유기준 · 안택수 · 정문헌 · 심재철 · 박찬숙 · 이해봉 · 안상수 · 김영선 · 이균현 · 엄호성 · 박재완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6. 7. 3 노웅래 · 정청래 · 강길부 · 전병현 · 한광원 · 김명자 · 이광철 · 김희선 · 김재홍 · 장복심 · 박찬석 · 김혁규 · 우상호 · 장향숙 · 이광재 · 김재윤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2006. 9. 7 서재관 · 최규식 · 김종률 · 문학진 · 양승조 · 강혜숙 · 박기춘 · 심재덕 · 이인기 · 김태년 · 이해봉 · 정청래 · 오제세 · 박상돈 · 정성호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6. 11. 6 김재윤 · 강창일 · 강혜숙 · 김우남 · 김태년 · 김희선 · 민병두 · 박상돈 · 안민석 · 안상수 · 이광재 · 이계경 · 이미경 · 이상경 · 이인기 · 이영호 · 지병문 · 정청래 · 제종길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윤원호 의원 대표발의)

(2005. 9. 27 윤원호 · 김재홍 · 김재윤 · 안민석 · 이광철 · 이미경 · 정청래 · 민병두 · 홍창선 · 홍미영 · 이성권 · 김영주 · 이강래 · 조정태 · 염동연 · 이근식 · 장향숙 · 류근찬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0 박형준 · 김명주 · 김기현 · 정문헌 · 권영세 · 안홍준 · 이성권 · 안상수 · 정화원 · 이주호 · 정병국 · 김희정 · 이계경 · 원희룡 · 권철현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7 손봉숙 · 신중식 · 김효석 · 배일도 · 이정일 · 엄호성 · 김태홍 · 김홍일 · 최인기 · 안상수 · 박계동 · 이낙연 · 김태년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8 박형준 · 이성권 · 김희정 · 원희룡 · 김석준 · 정화원 · 권철현 · 박찬숙 · 정문헌 · 김양수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대표발의)

(2006. 2. 22 박형준 · 이성권 · 김희정 · 정병국 · 원희룡 · 김석준 · 정종복 · 정화원 · 권철현 · 정문헌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6. 5. 9 이광철 · 김재윤 · 이경숙 · 박기춘 · 양형일 · 노현송 · 김춘진 · 권오을 · 서재관 · 신국환 · 이상배 · 김재경 · 강기정 · 김병호 · 한병도 · 정문헌 · 이성권 · 최경환 · 김명주 · 김효석 · 천영세 · 권영길 · 박세환 · 안홍준 · 김학송 · 정의화 · 지병문 · 김우남 · 구논회 · 김학원 · 심재엽 · 오제세 · 정형근 · 우상호 · 주승용 · 이상열 · 김재홍 · 정갑윤 · 정종복 · 선병렬 · 강창일 · 허천 · 이병석 · 김양수 · 김무성 · 김성조 · 김희정 · 윤원호 · 장윤석 · 민병두 · 서갑원 · 강혜숙 · 이정일 · 이시종 · 이상민 · 윤두환 · 조정태 · 김동철 · 이영호 · 박승환 · 이미경 · 김성곤 · 손봉숙 · 류근찬 · 김종률 · 이경제 · 김용갑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06. 7. 4 정청래 · 엄호성 · 이광철 · 임종인 · 정성호 · 이미경 · 김태홍 · 김재윤 · 손봉숙 · 윤원호 · 이경숙 의원 발의)

放送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6. 8. 11 최규식 · 이경제 · 유승민 · 신상진 · 이계경 · 김애실 · 정문헌 · 황우여 · 정병국 · 이해봉 · 이강두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신상진 · 김재원 · 박재완 · 엄호성 · 박세환 · 김애실 · 양형일 · 정문헌 · 박상돈 · 이계진 · 이해봉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6. 27 이계경 · 엄호성 · 신학용 · 김무성 · 김영선 · 심재철 · 손봉숙 · 진수희 · 김재윤 · 이상배 · 김석준 · 이성권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06. 7. 7 노웅래 · 장복심 · 정동채 · 강혜숙 · 강길부 · 이광철 · 정청래 · 박명광 · 신중식 · 주승용 · 김희선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6. 8. 4 신상진 · 이군현 · 주호영 · 이윤성 · 황진하 · 김영숙 · 엄호성 · 안홍준 · 김애실 · 김기현 · 이병석 · 김석준 · 김태환 · 박상돈 · 안명옥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

(2006. 9. 4 박종근 · 공성진 · 신상진 · 김정훈 · 이계경 · 황우여 · 안택수 · 서상기 · 유승민 · 김용갑 · 김무성 · 엄호성 · 이혜훈 · 주호영 · 안명옥 · 김태환 · 이인기 · 광성문 · 최경환 · 정갑윤 · 이해봉 · 이성권 · 문희 · 유기준 · 박세환 · 윤건영 · 정희수 · 김정권 · 김석준 · 장윤석 · 정중복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6. 9. 8 천영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임종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 의원 대표발의)

(2006. 9. 11 손봉숙 · 배기선 · 박명광 · 김종인 · 최인기 · 한화갑 · 박계동 · 김효석 · 이상열 · 이낙연 · 김홍일 · 박상돈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이경숙 · 이근식 · 양형일 · 장경수 · 김춘진 · 이인영 · 노영민 · 홍재형 · 김원웅 · 김태홍 · 홍미영 · 백원우 · 조일현 · 강기정 · 노용래 · 지병문 · 서갑원 · 박명광 · 김희선 · 김우남 · 한광원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발의)

(2006. 8. 29 이광철 의원 외 141인 발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발의)

(2006. 3. 30 이계경 · 유기준 · 임태희 · 윤두환 · 주성영 · 이성구 · 이상배 · 정중복 · 김석준 · 서상기 · 김무성 · 유승민 의원 발의)

(이상 2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고흥길 의원 대표발의)

(2004. 10. 14 고흥길 · 윤원호 · 김덕규 · 김명자 · 김재홍 · 김태년 · 나경원 · 박세환 · 박찬

숙 · 박형준 · 백원우 · 서병수 · 손봉숙 · 신국환 · 신중식 · 심재철 · 안병엽 · 엄호성 · 염동연 · 오제세 · 이강두 · 이경숙 · 이계경 · 이계진 · 이군현 · 이시종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오 · 이재웅 · 이해봉 · 정두언 · 정문헌 · 정병국 · 정성호 · 정중복 · 진수희 · 천영세 · 최구식 · 현애자 의원 발의)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철 의원 대표발의)

(2005. 10. 11 이광철 · 윤원호 · 정청래 · 이경숙 · 우상호 · 이미경 · 안민석 · 김재홍 · 강혜숙 · 노용래 · 김재윤 의원 발의)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8 김재윤 · 강혜숙 · 권오을 · 김성곤 · 김태홍 · 박상돈 · 박재완 · 손봉숙 · 심재덕 · 안민석 · 이근식 · 정성호 · 제종길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31건 문화관광위원회 보고

油類汚染損害賠償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

(2005. 7. 22 김명주 · 김학송 · 권철현 · 김종률 · 최인기 · 채수찬 · 우제창 · 김혁규 · 이시종 · 이성권 · 이계안 · 최철국 · 정갑윤 · 최규성 · 김우남 · 심재엽 · 신학용 · 심재철 · 김충환 · 안홍준 · 엄호성 · 김재경 · 이근식 · 이재오 · 이상경 · 박승환 · 나경원 · 이해봉 · 김영덕 · 노영민 · 김태년 · 박재완 · 허태열 · 안상수 · 이영호 · 유정복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山地管理法 一部改正法律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

(2005. 4. 4 김영덕 · 이시종 · 한광원 · 김명주 · 이인기 · 김낙성 · 홍문표 · 김광원 · 김기석 · 이방호 · 조일현 · 이상배 · 신중식 · 김재원 · 김우남 · 김용갑 · 안상수 · 이계진 · 권경석 · 이해봉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5. 4. 26 박상돈 · 권선택 · 심재덕 · 윤호중 · 이해봉 · 장경수 · 장복심 · 정장선 · 주승용 · 지병문 · 최인기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05. 7. 21 김재원 · 김영덕 · 김양수 · 김재경 · 김명주 · 김종률 · 박승환 · 유승민 · 이방호 · 이시중 · 이진구 · 주호영 · 홍문표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5. 11 정부 제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주 의원 대표 발의)

(2006. 9. 25 김명주 · 김용갑 · 한광원 · 남경필 · 정갑윤 · 이인기 · 박승환 · 이성권 · 이경재 · 조일현 · 신중식 · 홍문표 · 박재완 · 신상진 · 허대열 · 임해규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안

(2006. 5. 3 정부 제출)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 발의)

(2005. 7. 15 박승환 · 노영민 · 김양수 · 우제창 · 채수찬 · 심재엽 · 김명주 · 이시중 · 이목희 · 이계안 · 김혁규 · 김종률 · 엄호성 · 김정훈 · 이성권 · 김재원 · 정갑윤 · 최규성 · 김병호 · 최인기 의원 발의)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05. 9. 26 이영호 · 이정일 · 이시중 · 이상배 · 전병헌 · 정문헌 · 김명주 · 장경수 · 문병호 · 한광원 · 조일현 · 김우남 · 최성 · 신중식 · 김교홍 의원 발의)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05. 10. 25 김선미 · 신학용 · 김동철 · 김우남 · 오영식 · 김재윤 · 한광원 · 김한길 · 이영호 · 윤원호 · 백원우 · 제종길 의원 발의)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 발의)

(2006. 9. 6 한광원 · 신학용 · 황우여 · 강길부 · 김종률 · 김명주 · 신중식 · 장복심 · 김교홍 · 정성호 · 노웅래 · 김우남 · 박찬석 · 조일현 · 노현송 · 김태년 의원 발의)

海洋汚染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9. 8 이영호 · 유기홍 · 정성호 · 강창일 · 이시중 · 정문헌 · 한광원 · 임종인 · 이광철 · 최규성 · 김우남 · 지병문 · 백원우 · 유승희 · 제종길 의원 발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

(2005. 9. 27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23 안명옥 · 배일도 · 유정복 · 김영덕 · 정문헌 · 안택수 · 임해규 · 최경환 · 김한길 · 김춘진 의원 발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7. 31 정부 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05. 9. 9 이영호 · 한광원 · 이상배 · 이정일 · 신중식 · 우윤근 · 장경수 · 조일현 · 김우남 · 최성 · 엄동연 · 이시중 · 윤원호 · 신학용 · 안병엽 · 김교홍 · 김기현 · 안홍준 · 안민석 의원 발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05. 11. 17 이영호 · 신학용 · 안병엽 · 김선미 · 김우남 · 김명주 · 조일현 · 이정일 · 신중식 · 한광원 · 우윤근 · 우원식 · 김동철 · 이인영 · 강기정 · 김희선 · 강창일 · 양형일 · 김형오 · 김재윤 · 이상민 · 김기현 · 김영덕 · 노웅래 · 한화갑 의원 발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

(2005. 8. 30 우윤근 · 노영민 · 우원식 · 서갑원 · 주승용 · 신중식 · 김태홍 · 김낙순 · 김성곤 · 이상열 · 이은영 · 안민석 · 조일현 · 김선미 · 한광원 의원 발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06. 5. 11 김우남 · 정갑윤 · 강창일 · 김재윤 · 제종길 · 현애자 · 조일현 · 신중식 · 한광원 · 김낙성 · 이시중 · 김광원 의원 발의)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 발의)

(2005. 10. 21 이명규 · 김재원 · 심재철 · 권경석 · 김영선 · 광성문 · 안상수 · 김성조 · 정갑윤 · 이상득 · 임인배 · 윤건영 · 배일도 · 이해봉 · 이상배 · 고조홍 의원 발의)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 의원 대표 발의)

(2006. 4. 7 이계경·이명규·김정훈·유승희·이해봉·김성곤·이인기·정병국·손봉숙·정성호·황우여·박재완 의원 발의)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이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4. 12 이영호·안민석·안병엽·신중식·한광원·신학용·이정일·양승조·윤원호·최성·이시종·김우남·김형주·박찬석·홍재형·임종인·김춘진 의원 발의)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06. 8. 17 심재철·이인기·김재원·이해봉·배일도·박재완·이계경·진수희·심재덕·박찬숙·엄호성·김태년·우제창 의원 발의)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4 정부 제출)

動物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9 공성진·강기갑·고조흥·고홍길·김명주·김무성·김성곤·김희정·맹형규·박재완·박계동·배일도·송영선·안홍준·이경재·이성구·이인기·정의화·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2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9 정부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7 서갑원·최철국·이광재·노영민·송영길·이광철·정성호·우상호·김형주·배기선·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 이명규·권경석·김영숙·신상진·이성구·이성권·이인기·이재웅·이해봉·주성영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8 오영식·서갑원·김태년·우제항·김덕규·이시종·박순자·권선택·이명규·조정식·김형주·노영민·최철국 의원 발

의)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6. 7. 5 서갑원·한병도·염동연·최철국·이계안·조정식·우제항·김형주·오영식·김현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06. 3. 31 오제세·지병문·전병헌·안병엽·정성호·박재완·엄호성·서재관·박상돈·이시종·강기정·심재덕·안상수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6. 8. 17 서갑원·염동연·최철국·우제항·이계안·조정식·이시종·정성호·김덕규·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06. 9. 15 백원우·정화원·정청래·장향숙·최재성·김덕규·윤호중·강기정·양승조·장복심·이광재·김부겸·안민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6 정부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6. 13 정부 제출)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9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2006. 11. 10 정부 제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1. 8 맹형규·박상돈·배기선·곽성문·배일도·이원복·안택수·정두언·정진섭·이경재·유재건·신상진·정동채·남경필·이성구 의원 발의)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7 정부 제출)

濕地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8. 23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9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7 정부 제출)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中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0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이원영 · 박계동 · 이호웅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中改正法律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 김영주 · 제종길 · 박홍수 · 이철우 · 권선택 · 윤원호 · 최철국 · 이근식 · 심재덕 · 최규식 · 노영민 · 이시종 · 주승용 · 우제창 · 정성호 · 조정식 · 오영식 · 김낙순 · 정청래 · 홍미영 · 김형주 · 배일도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5. 7. 7 문병호 · 강기정 · 김춘진 · 단병호 · 신학용 · 안민석 · 이원영 · 이경숙 · 이은영 · 이인영 · 이종걸 · 임종인 · 정봉주 · 정성호 · 장복심 · 장향숙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5. 8. 24 김우남 · 강창일 · 김재윤 · 조일현 · 신중식 · 한광원 · 이시종 · 장경수 · 박찬숙 · 이강래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2006. 4. 25 정형근 · 김재원 · 안상수 · 전재희 · 정의화 · 이인기 · 엄호성 · 황우여 · 안병엽 · 문희 · 이해봉 · 신국환 · 박재완 의원 발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7 정부 제출)

노동조합및노동관계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9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

찬 · 심상정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의원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7 정부 제출)

노동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9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 임종인 의원 발의)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2006. 9. 20 최용규 · 문석호 · 송영길 · 김종률 · 조성래 · 정성호 · 우원식 · 우윤근 · 노웅래 · 이강래 의원 발의)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7 정부 제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연 의원 대표 발의)

(2005. 8. 16 염동연 · 김낙순 · 김종률 · 노현송 · 박상돈 · 박재완 · 박찬숙 · 신상진 · 심재철 · 서갑원 · 서재관 · 선병렬 · 안상수 · 이근식 · 이상경 · 이시종 · 이영호 · 이원영 · 이해봉 · 우제창 · 엄호성 · 정성호 · 조일현 · 최인기 · 한광원 · 황우여 의원 발의)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 발의)

(2005. 8. 18 이경숙 · 안민석 · 박찬숙 · 황우여 · 이재오 · 이성권 · 엄호성 · 김희선 · 강혜숙 · 서갑원 · 서혜석 · 심재철 · 장향숙 · 김현미 · 박상돈 · 심재덕 · 서재관 · 한광원 · 한명숙 · 유승희 · 장영달 · 홍미영 · 조배숙 · 최순영 · 이미경 · 이은영 · 최규성 · 민병두 · 유시민 의원 발의)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18 정부 제출)

(이상 1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勞使政委員會의設置및運營등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2 정두언 · 유정복 · 이인제 · 엄호성 · 안상수 · 박재완 · 이해훈 · 이인기 · 공성진 · 신상진 · 박순자 · 이계진 · 정화원 · 고경화 · 윤건영 · 이주호 · 이재웅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2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仁川國際空港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2. 16 박상돈·강혜숙·김동철·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2. 16 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2. 16 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韓國水資源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2. 16 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5. 9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6 한선교·권영세·이혜훈·이인기·정성호·엄호성·정중복·임해규·고조홍·정병국·유기준·김영선·남경필·이규택·전재희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3. 3 정부 제출)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4 이영순·강기갑·강창일·권영길·노회찬·단병호·문학진·박상돈·박찬숙·서재관·심상정·임종인·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5 서갑원·강봉균·조일현·변재일·조배숙·우윤근·주승용·강길부·정성

호·홍재형·박상돈·정장선·유필우·한병도·강혜숙·김선미·김현미·배기선·최규식·이광재·노영민 의원 발의)

부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김석준 의원 대표발의)

(2006. 11. 24 김석준·허천·정희수·김정권·이진구·윤두환·유정복·김충환·심재철·정문현·이인기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05. 9. 21 민병두·이은영·정장선·최재성·송영길·안영근·김태년·조경태·주승용·김한길·김교홍·조성래·최용규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4 이낙연·강혜숙·김태홍·김희정·노응래·박재완·배기선·배일도·심재철·엄호성·이명규·이상득·이윤성·이해봉·정성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5 조경태·신중식·우원식·임채정·최규성·이호웅·김낙순·조일현·노응래·이미경·노영민·한광원·김형주·김태홍·이기우·조정식·이목희·이화영·선병렬·민병두·김동철·장향숙·이영호·홍준표·최규식·정봉주·김용갑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6. 2. 16 박상돈·강혜숙·김동철·김성곤·박재완·선병렬·양승조·엄호성·이근식·장복심·주승용·조경태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2006. 3. 2 정장선·김동철·김성곤·김재홍·노영민·박상돈·서재관·윤호중·이상경·정갑윤·정의용·주승용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6. 6. 12 노영민·주승용·우원식·우윤근·장복심·서재관·조경태·정장선·박상돈·김동철·장향숙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6. 5. 15 엄호성·박재완·이상득·이윤성·윤건영·김태환·최경환·고홍길·고경화·정병국·김형오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6. 6. 9 이종걸·황우여·박재완·홍창선·서혜석·양승조·정청래·유승희·변재일·강성종·김영춘·양형일 의원 발의)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05. 9. 21 김정권 · 박재완 · 배일도 · 안상수 · 나경원 · 엄호성 · 유기준 · 김재경 · 이인기 · 광성문 · 심재철 · 이명규 · 최인기 · 김재원 · 이해봉 의원 발의)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2005. 12. 20 박찬숙 · 임해규 · 이인기 · 김재원 · 박세환 · 심재철 · 이성구 · 권경석 · 고조흥 · 심재덕 의원 발의)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6. 3. 29 노영민 · 우원식 · 김동철 · 신중식 · 주승용 · 이호웅 · 이시중 · 우윤근 · 장경수 · 조경태 · 강혜숙 · 윤호중 · 박상돈 의원 발의)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6. 6. 19 주승용 · 구논회 · 김동철 · 김영선 · 노영민 · 노현송 · 박기춘 · 박상돈 · 박재완 · 박찬숙 · 서혜석 · 신중식 · 심재덕 · 심재철 · 안상수 · 엄호성 · 우윤근 · 이계경 · 이근식 · 이상경 · 장복심 · 전병현 · 정갑윤 · 정문현 · 정성호 · 정장선 · 조일현 · 황우여 의원 발의)

自動車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6. 8. 3 노영민 · 우원식 · 주승용 · 이시중 · 김동철 · 조경태 · 신중식 · 박상돈 · 오영식 · 장경수 · 우윤근 의원 발의)

交通施設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05. 7. 21 주승용 · 구논회 · 이근식 · 고진화 · 김태홍 · 김종률 · 서혜석 · 조경태 · 안상수 · 엄호성 · 서재관 · 이시중 · 신중식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05. 12. 6 윤호중 · 안민석 · 최규식 · 엄호성 · 김태홍 · 노영민 · 김동철 · 김종률 · 안병엽 · 김성곤 · 김태년 · 이근식 · 정성호 · 신상진 · 주승용 · 전여옥 · 최인기 · 배일도 · 서재관 · 심재덕 · 우윤근 · 박계동 · 장경수 · 안명옥 · 손봉숙 · 권오을 · 임인배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26 정부 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2006. 11. 10 이영순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심상정 · 임종인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6. 9. 4 정부 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6. 11. 30 이인기 · 김석준 · 김재경 · 서병수 · 김영덕 · 김정훈 · 이해봉 · 유승민 · 서상기 · 정갑윤 · 김성조 · 권경석 · 광성문 의원 발의)

(이상 2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9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한국은행 지역본부 및 지점 존치 건의안**

(2006. 12. 15 최구식 · 김재경 · 서갑원 · 김성조 · 정종복 · 박형준 · 김양수 · 정갑윤 · 이강두 · 김선미 · 권경석 · 김덕룡 · 김태환 · 이병석 · 김학원 의원 발의)

12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3호 폐지에 관한 청원**

(2006. 12. 11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4-1 (사)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김세훈 외 7029 인으로부터 최용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경매완료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구제에 관한 청원

(2006. 12. 1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405-4 한양아파트 101동 702호 박희수 외 21 인으로부터 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영산강 3단계 간척지 무상양여에 관한 청원

(2006. 12. 13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108번지 정찬길 외 572인으로부터 채일병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6. 12. 18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36 김재석 외 110만 3461인으로부터 최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의견서 제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2006. 12. 1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요구서 제출

국군부대(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철군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

(2006. 12. 22 임종인 의원 등 39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외규장각도서 반환에 관한 질문서

(2006. 12. 20 조순형 의원 제출)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방안에 관한 질문서

(2006. 12. 20 최철국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6. 12. 8 정부 제출)

창원교통방송국 설립허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6. 12. 7 정부 제출)

창원교통방송국 설립허가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소방용역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06. 12. 14 정부 제출)

북한핵개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06. 12. 20 정부 제출)

(이상 5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공적자금운용현황보고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실사 보고

(이상 2건 2006. 12. 13 정부 제출)

이상 2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연간 활동 상황 보고

(2006. 12. 13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